

월간

재정포럼

2024. August
Vol.338

08



권두칼럼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비용
| 김진영

현안분석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 최인혁

특집

2024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양순필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
| 권성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자산주 매입에 대해
소비세 부과 외

Kipf

재정포럼

2024.08. Vol.338

월간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통권 제338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 02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비용
| 김진영

현안분석

- 08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 최인혁

특집

- 36 2024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양순필
- 42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
| 권성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62 미국 - 자사주 매입에 대해 소비세 부과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비용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들어가며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활동이 요구되는 영역이 있고, 그런 활동에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 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활동과 그에 따른 재원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세는 흥미롭고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

한 인터넷 쇼핑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에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일명 ‘개모차’의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추월하였다고 한다. 반려동물용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 합계 판매량을 100%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품의 판매 비율이 57%라면 유아용은 43%라는 것이다. 이런 통계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사실 반려동물 두 수나 반려가구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려동물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관련한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반려동물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아끼는 반려인들이 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동물을 유실, 유기하는 사례를 보자. 동물자유연대에서 나온 유실·유기동물 발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거리로 나온 동물은 11만 2,226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 소요된 예산도 따라 증가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에서 13만 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 26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기 동물의 보호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유기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나 공중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유기 동물의 공격에 따른 피해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된 제도가 반려동물세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핵심 논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추가로 동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소유자들만 반려동물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동물권이 향상되고 동물 학대가 감소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반려동물세의 해외사례

반려동물세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의 반려동물세는 주 차원에서 징수되며 개의 몸무게와 보유 마리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개 보유 수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물론 개체수 억제를 위해서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위험한 견종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시행한다.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최소 100유로에서 몸무게의 증가에 따라 600유로 정도까지 세금이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인 경우 최소 800유로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반려견들에 대한 경계, 교정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세금의 운영은 독일에서 태어난 반려견이나 독일로 이동하는 반려견에게 내장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기에 가능하다.

일본은 1982년 나가노현을 마지막으로 반려견 보유세가 폐지되었지만, 번식장과 브리더, 펫숍 등 반려동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높은 과세를 매기는 방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된 제도가 반려동물세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핵심 논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어떤 세금이라도
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며
징수를 위한
여러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식을 대신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견종인 푸들의 분양비용이 한국에서는 시중 40~60만원이지만, 일본에서는 400만원에서 1,2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의 징세 방식은 모든 견주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징세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급자들에 대한 규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견주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피한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분양비용이 세금으로 인해 매우 비싸지는 기는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동물을 키우는 사례를 크게 줄이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높은 간접세로 인해 높아진 반려동물 양육 진입장벽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고,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 특히 유기견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경우 1995년 이전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1995년 「애완동물 금지법」을 폐기하고, 애완견세를 바로 도입했다. 중국은 반려견을 기르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높은 편이다. 한 가정에서는 동물을 한 마리만 기를 수 있고, 크기나 품종 또한 정해져 있다.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식 등록이 확정된 개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통상 3천~4천위안이 들며, 매년 보유세로 1천위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세의 도입 논쟁

이런 세금의 도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 논쟁이 따를 것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유기 동물 처리나 반려동물의 분노 처리 등은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동물을 혐오까지는 않더라도 무서워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향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부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반려동물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그 외부성은 커질 것이고, 이 외부성은 교정하기 어려운 수

준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공존이 그렇듯이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에도 편익과 함께 비용이 따른다. 우선 세금이 부과된다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 지나친 고율 과세는 미래의 유망한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증가와 지나친 감소 사이에서 적절한 세금의 수준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은 반려동물 보유를 부유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1인 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소유에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나가며

어떤 세금이라도 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며 징수를 위한 여러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을 떠나 인간과 동물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해서도 반려동물의 관리를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관련 인프라를 어느 정도 마련했는지는 모르나 반려동물 관리는 분명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현재의 정책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지, 시기상조라는 단어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려동물세의 도입 여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경제 사회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 급격한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지 큰 틀에서 실천가능한 대안을 놓고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반려동물세의 도입 여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경제 사회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



현안분석

- +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¹⁾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cho@kipf.re.kr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24년 기준 29.2조원 수준이다.²⁾ 이 중 직접일자리 유형에 편성된 예산은 3.6조원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서비스 유형에 편성된 예산(1.6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OECD 주요국 대비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³⁾ 직접일자리 유형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 2조 26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⁴⁾의 규모가 가장 크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고령층에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⁵⁾ 지난 2004년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14.7만개 증가한 10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⁶⁾ 우리나라 인구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원내외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의 수집·정리를 위해 애써준 이희선 연구원에게 저자는 감사를 표합니다. 본고는 Cho and Choi(2024)의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편집방향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본고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류나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2) 고용노동부, 2024. 4. 17.

3) OECD Going Digital Toolkit, “Public spending o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s a share of GDP,” <https://goingdigital.oecd.org/en/indicator/42>, 검색일자: 2024. 6. 10.

4) 보건복지부, 2024. 1. 18. p. 3.

5) 보건복지부, 2024, pp. 280~281.

6) 보건복지부, 2024. 1. 18. p. 3.

구조의 특성상(적어도 단기적으로) 사업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수준⁷⁾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일정 수준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고령층에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활동 참여 역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창출되는 대다수의 일자리가 저임금 공공형 일자리라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일자리들은 고령층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김수린 외, 2020; 박경하 외, 2020), 노동시장 내 민간일자리를 감소시킬 여지 또한 지니고 있다(Behar and Mok, 2019; Ranzani and Tuccio, 2017). 따라서 (저임금) 공공형 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 공급 증가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을 신중히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수치적 분석을 시도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일자리 공급은 노동시장 내 민간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 모형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구축효과와 발생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첫 번째 목표이다. 이어 공공일자리 공급량, 활동비, 활동기간 등의 변화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목표로,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 설정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 내에서 흥미롭게 논의되어온 주제들 중 하나이다. 가령 Holmlund and Linden(1993)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공공 부문의 일시적 일자리 창출이 임금효과로 인해 실업률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였으며, Algan et al.(2002)의 경우 OECD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대창·문외솔(2015)이 구조 모형에 기반한 모의실험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전체 고용률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민간일자리 고용률은 다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수치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
설정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7) OECD(2023, p. 199)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본 연구는 공공일자리 창출이 민간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해당 연구들과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도 공공일자리 창출이 민간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해당 연구들과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후 제Ⅲ장에서는 간단한 구조 모형을 바탕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논의하였던 모형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고, 확장된 모형을 활용하여 반사실적 정책실험을 수행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기로 한다.

Ⅱ. 노인일자리 사업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1> 참조). 공익활동형에는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업 대상이며 월 30시간 공익활동 참여 후 활동비 2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고령층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서, 65세 이상이 사업 대상이며 공익활동형에 비해 월 활동시간이 길고 활동비 역시 높은 편이다. 한편 민간형의 경우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세분되는데, 대체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표량 및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지난 2004년 사업 시작 당시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에는 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052억원의 예산이([그림 1] ‘가’ 참조), 2024년에는 10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조 2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⁸⁾ 그에 따라 (단순 계산된) 목표 일자리당 국비 예산은 2014년 98만원에서 2024년 197만원으로 2배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유

8) 보건복지부, 2024. 1. 18. p. 3.

형별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실적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2022년 기준 전체 창출 일자리의 71.1%가 공익활동 유형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2012년 기준 87.6%와 비교해 16.6%p 감소한 수치로, 공익활동의 비중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 ‘나’ 참조).

지역별로 노인인구 비중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등에도 지역별 차이가 관찰된다. 지역별(시·도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2022년 확정내시 사업량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1.5%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업량(12.9%)이 배정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4%가 거주하는 세종에 가장 적은 사업량(0.5%)이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별 사업량 배정이 노인인구 비중에만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인구 대비 사업량 비율에서 지역별

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실적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2022년 기준 전체 창출
일자리의 71.1%가
공익활동 유형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별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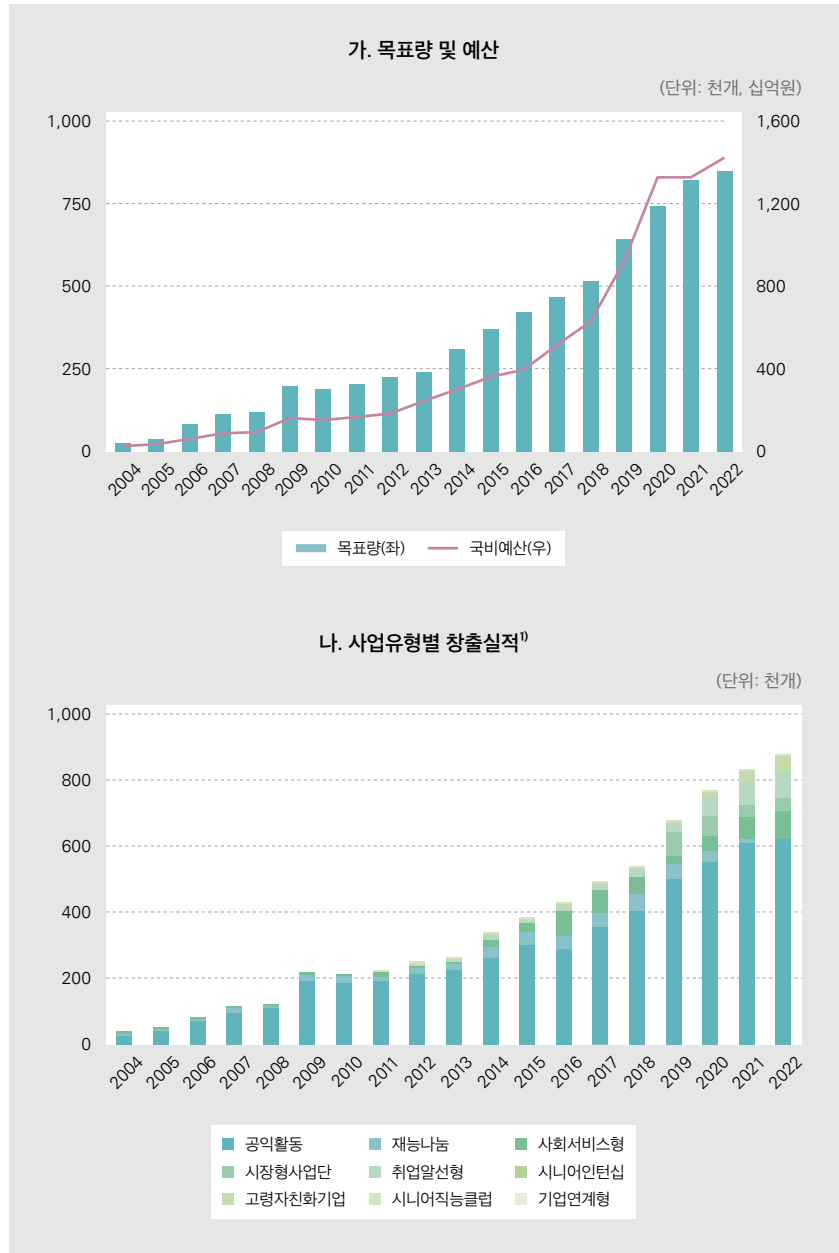
유형	내용	대상	사업량(천개)		월 평균 시간	보수·지원 내역 (활동개월)
			2023년	2024년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년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654	30 (3시간, 10일)	월 29만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80	141	60 (3시간, 20일)	월 76.1만원 (10개월)
	선도 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5	10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 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 간 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45	58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88	95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55	70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 40만원 × 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 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계	-	-	883	1,030	-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1. 18. p. 3.

지역별로 노인인구 비중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등에도 지역별 차이가 관찰된다.

차이가 관찰되는데, 서울(4.6%)과 경기(4.7%)의 경우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원(16.1%)과 전북(15.9%)의 경우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량, 예산, 실적



주: 1) 2022년 사회서비스형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도 포함됨
출처: <부표 1>에 제시된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지역별(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목표·실적 및 노인인구 현황(2022년)

(단위: 개, 명, %)

구분	지자체경제성장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창출목표 및 창출실적										노인인구 현황			
	창출목표			창출실적							60세 이상		65세 이상	
	확정내시 사업량(A)	비중	배정 사업량 ¹⁾	공익활동	추진실적 ²⁾ (B)	공익활동	목표 대비 추진율(B/A)	누적 참여 인원	총인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60세 이상
총계	727,205	(100.0)	734,437	616,581	760,498	626,391	104.6	850,438	51,439,038	13,485,327	26.2	9,267,290	18.0	
서울	76,135	(10.5)	76,701	64,054	77,701	63,569	102.1	88,043	9,428,372	2,376,138	25.2	1,658,207	17.6	
부산	53,915	(7.4)	53,809	43,583	56,213	44,496	104.3	63,055	3,317,812	1,015,212	30.6	712,412	21.5	
대구	29,760	(4.1)	29,772	25,034	30,522	25,198	102.6	34,155	2,363,691	635,665	26.9	435,698	18.4	
인천	46,051	(6.3)	46,520	38,435	49,676	39,933	107.9	56,097	2,967,314	712,345	24.0	463,850	15.6	
광주	28,240	(3.9)	28,483	24,292	31,525	26,925	111.6	34,625	1,431,050	326,561	22.8	222,970	15.6	
대전	20,372	(2.8)	20,356	17,145	20,412	16,817	100.2	22,984	1,446,072	345,759	23.9	232,663	16.1	
울산	13,529	(1.9)	13,529	11,138	13,853	11,163	102.4	15,432	1,110,663	260,238	23.4	163,812	14.7	
세종	3,476	(0.5)	3,432	2,746	3,352	2,590	96.4	3,727	383,591	61,005	15.9	40,219	10.5	
경기	93,751	(12.9)	93,986	75,469	99,301	78,368	105.9	112,316	13,589,432	3,023,136	22.2	1,992,807	14.7	
강원	56,175	(7.7)	58,483	50,790	58,644	49,633	104.4	65,957	1,536,498	499,873	32.5	349,874	22.8	
충북	31,798	(4.4)	32,224	28,089	33,408	28,542	105.1	37,594	1,595,058	459,521	28.8	316,939	19.9	
충남	39,334	(5.4)	39,192	32,195	40,121	32,297	102.0	44,321	2,123,037	615,003	29.0	436,895	20.6	
전북	65,442	(9.0)	65,691	55,382	69,380	57,615	106.0	75,882	1,769,607	565,379	31.9	410,619	23.2	
전남	52,938	(7.3)	53,540	47,966	53,736	47,594	101.5	59,392	1,817,697	624,130	34.3	457,481	25.2	
경북	51,813	(7.1)	54,153	46,399	55,956	47,137	108.0	62,481	2,600,492	865,860	33.3	618,275	23.8	
경남	52,962	(7.3)	53,046	44,292	54,916	45,134	103.7	61,376	3,280,493	932,541	28.4	638,801	19.5	
제주	11,514	(1.6)	11,520	9,572	11,782	9,380	102.3	13,001	678,159	166,961	24.6	115,768	17.1	

주: 1) 배정사업량은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내시 목표사업량과 차이가 있음

2) '공익활동'은 '누적참여자 수 - 중도포기자 수로 산출하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누적참여자 수로 산출함

출처: 노인인력개발원, 2023, p. 55, <표 2-1-17>, p. 56, <표 2-1-18>, p. 170, <표 3-1-6>

직접일자리 사업이
유발할 수 있는
구축효과 등의 발생
메커니즘은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간단한 모형 경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Ⅲ. 이론 분석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공공일자리 수가 경제 내 구직자 수 및 빈 민간일자리 수 등과 비교하여 미미하다면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반면 공급되는 공공일자리 수가 상당할 경우 구직자 및 구인자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 민간일자리 수가 기존 대비 크게 감소하는 구축효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직접일자리 사업이 유발할 수 있는 구축효과 등의 발생 메커니즘을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간단한 모형 경제를 통해 살펴본다. 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현실의 세세한 부분을 해당 모형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현상의 작동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고유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설계된 모형을 바탕으로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지니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모형을 활용한 이론적 분석에 우선 집중하고 모형을 활용한 수치적 분석은 제Ⅳ장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1. 모형 소개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엄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탐색-결합(search and matching) 모형을 소폭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일 자리를 일정 수준 창출하여 시장에 공급하며, 창출된 공공일 자리는 무작위로 선정되는 구직자들에 의해 모두 채워진다고 가정한다. 이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공일 자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모형 밖에서 모두 충당된다고 가정한다.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을 통하여 공공일 자리 또는 민간일 자리에 취업하게 되는데, 어떤 유형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지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가. 구직자 수

전체 인구가 1로 고정된 경제에서 (외생적인) 공공일자리 종사자 수(공급량)를 ℓ_g (내생적인) 민간일자리 종사자 수를 ℓ_p 라 하면, 경제 내 구직자 수 u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u = 1 - \ell_g - \ell_p \tag{식 (1)}$$

공공일자리의 (외생적인) 종료율을 δ_g 라 하면, 정상 균형(stationary equilibrium)에서 공공일자리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내생적인) 구직자의 공공일자리 신규 취업률 g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g := \frac{\delta_g \ell_g}{u} \tag{식 (2)}$$

한편 민간일자리의 (외생적인) 종료율을 δ_p , (내생적인) 구직자의 민간일자리 신규 취업률을 $p(\theta)$ 라 하면,⁹⁾ 정상 균형에서는 민간일자리 수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p(\theta)u = \delta_p \ell_p$ 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이때 식 (1)을 이용하면 구직자 수 u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 \frac{\delta_p}{\delta_p + p(\theta)} (1 - \ell_g) \tag{식 (3)}$$

식 (3)은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 θ 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구직자 수 u 가 공공일자리 공급량 ℓ_g 의 감소함수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만일 공공일자리 공급량 ℓ_g 의 증가에 따라 구인배율 θ 의 값이 변할 경우 구직자 수 u 의 증감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나. 기대 효용 및 기대 이윤

경제 내 구직자들은 여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효용(b)을 얻는다. 이와 동시에 구직활동을 통해 공공일자리 또는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구직자의 기대 효용을 U 라 하면 이를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엄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탐색-결합(search and matching) 모형을 소폭 확장한다.

9) 단, θ 는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로 빈 민간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이다.

경제 내 구직자들은
여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효용(b)을 얻으며
구직활동을 통해
공공일자리 또는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rU = b + g(G - U) + p(\theta)(E - U) \quad \text{식 (4)}$$

단, r 은 이자율, G 는 공공일자리 종사자의 기대 효용, E 는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기대 효용을 각각 의미한다.

공공일자리 종사자는 노동 공급으로부터 외생적으로 결정된 임금 $\bar{w} \in (b, y)$ 를 받는 반면, 민간일자리 종사자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w 를 받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모두 일정한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G = \bar{w} + \delta_g(U - G) \quad \text{식 (5)}$$

$$rE = w + \delta_p(U - E) \quad \text{식 (6)}$$

이때 식 (5)와 식 (6)을 이용하면 공공일자리 종사자의 잉여와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잉여를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 - U = \frac{\bar{w} - rU}{r + \delta_g} \quad \text{식 (7)}$$

$$E - U = \frac{w - rU}{r + \delta_p} \quad \text{식 (8)}$$

한편 빈 민간일 자리를 유지할 경우 c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며, 채용률 $q(\theta)$ 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한 확률로 해당 빈 일 자리의 종사자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채워진 민간일 자리의 기대 이윤을 J 라 하면, 빈 민간일 자리의 기대 이윤 V 는 다음의 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rV = -c + q(\theta)(J - V) \quad \text{식 (9)}$$

채워진 민간일 자리의 경우 y 만큼을 생산하고 w 만큼의 임금을 종사자에게 지불한다. 또한 일정한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 다시 빈 일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J = y - w + \delta_p(V - J) \quad \text{식 (10)}$$

이때 빈 민간일자리의 기대 이윤이 0(즉, $V=0$)이라 가정하면 식 (9)와 식 (10)을 결합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frac{c}{q(\theta)} = \frac{y - w}{r + \delta_p} \quad \text{식 (11)}$$

다. 민간일자리 임금

본 모형에서 민간일자리의 잉여(S)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S := (E - U) + (J - V)$ 라 하면, 식 (6)과 식 (10)을 이용하여 S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frac{y - rU}{r + \delta_p} \quad \text{식 (12)}$$

한편 민간일자리의 임금이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E - U = \beta S$ (단, β 는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협상력)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식 (4)에 식 (7)과 식 (1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rU = \left[1 + \frac{g}{r + \delta_g} + \frac{p(\theta)}{r + \delta_p} \beta \right]^{-1} \left[b + \frac{g}{r + \delta_g} \bar{w} + \frac{p(\theta)}{r + \delta_p} \beta y \right] \quad \text{식 (13)}$$

또한 식 (8)에 식 (1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w = rU + \beta(y - rU) \quad \text{식 (14)}$$

나아가 식 (13)을 식 (1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임금 w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채워진 민간일자리의 경우 y 만큼을 생산하고 w 만큼의 임금을 종사자에게 지불하며, 일정한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 다시 빈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모형의 균형은

식 (11)과 식 (18)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 θ^* 와

민간일자리 임금 수준

$w^*(\theta^*, \ell_g)$ 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w = b + \frac{(1 - \beta)\tilde{g}}{1 + \tilde{g} + \beta\tilde{p}(\theta)}(\bar{w} - b) + \frac{\beta[1 + \tilde{g} + \tilde{p}(\theta)]}{1 + \tilde{g} + \beta\tilde{p}(\theta)}(y - b) \quad \text{식 (15)}$$

단, $\tilde{g} := g/(r + \delta_g)$ 및 $\tilde{p}(\theta) := p(\theta)/(r + \delta_p)$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직자의 공공일자리 신규 취업률 g 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데, 식 (2)와 (3)을 이용하면 g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 = \frac{\delta_g}{\delta_p} \cdot \frac{\ell_g}{1 - \ell_g} [\delta_p + p(\theta)] =: g(\theta, \ell_g) \quad \text{식 (16)}$$

이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g(\theta, \ell_g)$ 가 ℓ_g 의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다.

$$\frac{\partial g(\theta, \ell_g)}{\partial \ell_g} = \frac{\delta_g}{\delta_p} \cdot \frac{\delta_p + p(\theta)}{(1 - \ell_g)^2} > 0 \quad \text{식 (17)}$$

나아가 최종적으로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임금 w 를 다음과 같이 구인배율 θ 와 공공일자리 공급량 ℓ_g 의 함수로 기술할 수 있다.

$$w(\theta, \ell_g) := b + \frac{(1 - \beta)\tilde{g}(\theta, \ell_g)}{1 + \tilde{g}(\theta, \ell_g) + \beta\tilde{p}(\theta)}(\bar{w} - b) + \frac{\beta[1 + \tilde{g}(\theta, \ell_g) + \tilde{p}(\theta)]}{1 + \tilde{g}(\theta, \ell_g) + \beta\tilde{p}(\theta)}(y - b) \quad \text{식 (18)}$$

단, $\tilde{g}(\theta, \ell_g) := g(\theta, \ell_g)/(r + \delta_g)$ 이다. 식 (18)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w(\theta, \ell_g)$ 가 ℓ_g 의 증가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점이다.¹⁰⁾

$$[r + \delta_p + \beta p(\theta)]\bar{w} > (r + \delta_p)b + \beta p(\theta)y \quad \text{식 (19)}$$

10) 참고로 $\delta_g = \delta_p$ 인 경우에도 식 (19)는 $w(\theta, \ell_g)$ 가 ℓ_g 의 증가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반면 $\bar{w} = w$ 인 경우 $w(\theta, \ell_g)$ 는 모형 내 변수들의 값 또는 구인배율 θ 의 값과 무관하게 ℓ_g 의 증가함수가 된다.

이때 $p(\theta)$ 의 정의에 의해 $p(\theta) \leq 1$ 이므로, 식 (19)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다음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r + \delta_p + \beta)\bar{w} > (r + \delta_p)b + \beta y \quad \text{식 (20)}$$

2. 균형 및 구축효과

가. 모형의 균형

이상에서 소개한 모형의 균형은 식 (11)과 식 (18)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동 시장 내 구인배율 θ^* 와 민간일자리 임금 수준 $w^*(\theta^*, \ell_g)$ 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식 (11)은 빈 민간일자리의 기대 이윤이 0이라는 자유 진입(free-entry)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모형에서의 노동 수요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식 (18)은 (공공일자리 수 ℓ_g 가 주어진 상태에서) 구인배율 변화에 따른 민간일자리 임금 수준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식 (11)의 경우 구인배율 증가 시 민간일자리 임금이 감소되어야 함을, 식 (18)의 경우 구인배율 증가 시 민간일자리 임금이 증가되어야 함을 각각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식 (11)로 표현되는 노동 수요 곡선과 식 (18)로 표현되는 임금 곡선은 (θ, w) -평면에서 교차하게 되며, 해당 교차점이 모형의 (유일한) 균형이 된다. 참고로 모형의 균형 $(\theta^*, w^*(\theta^*, \ell_g))$ 가 결정되면 균형에서의 구직자 수 u^* 는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에 해당되는 식 (3)으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다.

나. 구축효과

이상의 논의에서 공공일자리 공급량 ℓ_g 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외생적으로 주어진 공공일자리 공급량하에서 모형의 균형이 도출되었다. 만일 ℓ_g 의 값이 증가할 경우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흥미로운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모형 내 모수들의 값이 식 (19) 또는 식 (20)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모형의 모수들이 식 (19) 또는 식 (20)을 만족시킬 경우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w(\theta, \ell_g)$ 가 ℓ_g 의 증가함수가 되므로, 식 (18)로 표현되는 임금 곡선은 [그림 2] '가'에 도해된 바와 같이 상방 이동하게 된다. 반면 식 (11)로 표현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ℓ_g 값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θ, w) -평면상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 시 노동 시장 내 구인배율은 낮아지고 민간일자리 임금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균형이 이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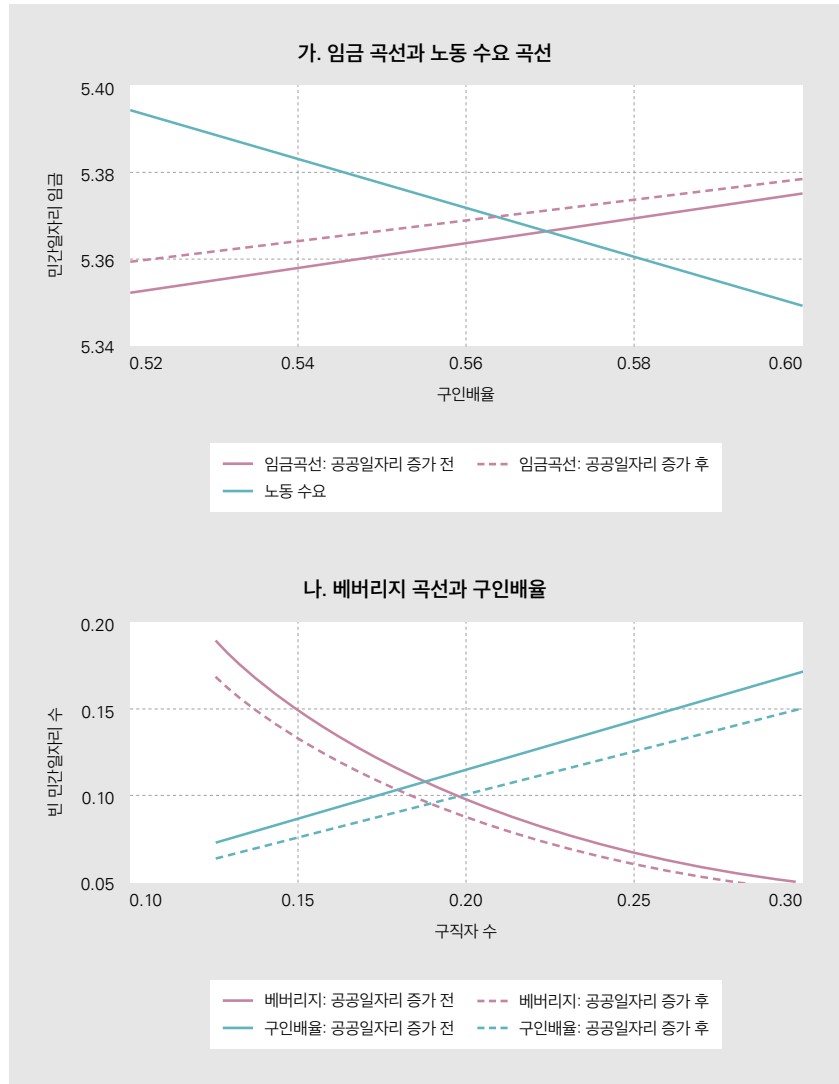
한편 공공일자리 공급량의 증가는 [그림 2] '나'에 도해된 바와 같이 식 (3)으로 표현되는 베버리지 곡선을 원점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균형 구

만일 ℓ_g 의 값이 증가할 경우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흥미로운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모형 내 모수들의 값이 식 (19) 또는 식 (20)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임금이
충분히 높은 수준일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구직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한 반면,
공공일자리 임금이
낮은 수준일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는
구직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인배율의 변화가 없다면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는 구직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의 모수들이 식 (19) 또는 식 (20)을 만족시킬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는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을 낮추게 되며, 이는 (u, v) -평면상에서 구인배율 직선의 기울기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베버리지 곡선의 원점 방향 이동으로 인한 구직자 수 감소분은 구인배율 직선의 기울기 감소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상쇄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공

[그림 2] 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축효과



주: 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축효과를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내 수치들은 현실 경제와 무관함
출처: 저자 작성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구직자 수 감소가 아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형 내 모수들의 값이 식 (19)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ℓ_g 값 증가 시 식 (18)로 표현되는 임금 곡선은 (θ, w) -평면상에서 하방 이동하게 된다. 이때 식 (11)로 표현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여전히 이동하지 않으므로,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은 높아지고 민간일자리 임금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균형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u, v) -평면상에서 구인배율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베버리지 곡선의 원점 방향 이동으로 인한 구직자 수 감소분에 더해 노동시장 내 구직자 수가 더 감소할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 시 노동시장 균형의 변화 양상은 모형의 모수들이 식 (19)를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 (19)는 $w(\theta, \ell_g)$ 가 ℓ_g 의 증가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공공일자리 임금 \bar{w} 의 값이 충분히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임금이 충분히 높은 수준일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구직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한 반면, 공공일자리 임금이 낮은 수준일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구직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위 논의를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공공일자리 임금이 낮은 수준일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구직자 수(실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후생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이다. 저임금 공공일자리의 공급량 확대는 민간일자리 임금을 하락시키는 등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일자리 공급량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IV. 수치 분석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제Ⅲ장에서 이론 모형을 소폭 확장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구축한다. 이어 제2절에서

공공일자리 임금이 낮은 수준일 경우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구직자 수(실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후생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하여 노동시장 미참여 상태가 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는 모형 내 모수들의 값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모수값이 정해진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제3절에서 제시한다.

1. 모형 확장

고령층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취업 및 실업 상태만 허용하고 있는 제Ⅲ장의 이론 모형을 수치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달리 말해 Pries and Rogerson(2009), Garibaldi and Wasmer(2005) 등과 같이 노동시장 미참여 상태가 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 $z \in Z$ 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때 분석의 단순함을 위해 개인별 이질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¹¹⁾

모형 내 유형- z 개인들의 수를 $\ell(z)$,¹²⁾ 유형- z 개인들 중 노동시장 미참여자 수를 $\ell_n(z)$, 유형- z 개인들 중 공공일자리 종사자 수를 $\ell_g(z)$, 유형- z 개인들 중 민간일자리 종사자 수를 $\ell_p(z)$ 로 각각 정의하면, 유형- z 개인들 중 구직자 수 $u(z)$ 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u(z) = \ell(z) - \ell_n(z) - \ell_g(z) - \ell_p(z) \quad \text{식 (21)}$$

이때 제Ⅲ장에서와 같이 정상 균형을 가정하면, $u(z)$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z) = [\ell(z) - \ell_n(z) - \ell_g(z)] \frac{\delta_p}{\delta_p + p(\theta)} \quad \text{식 (22)}$$

11) 따라서 개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는 모형 내에서 불변이다.

12) 모형 내 인구는 여전히 1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int \ell(z) dz = 1$ 이다.

한편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 z 개인의 기대 효용을 $N(z)$, 유형- z 구직자의 기대 효용을 $U(z)$, 유형- z 공공일자리 종사자의 기대 효용을 $G(z)$, 유형- z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기대 효용을 $E(z)$ 라 하면, 각 상태에서의 기대 효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rN(z) = z \quad \text{식 (23)}$$

$$rU(z) = (1-s)z + g[G(z) - U(z)] + p(\theta)[E(z) - U(z)] \quad \text{식 (24)}$$

$$rG(z) = (1-h)z + \bar{w} + \delta_g[\max\{N(z), U(z)\} - G(z)] \quad \text{식 (25)}$$

$$rE(z) = w(z) + \delta_p[\max\{N(z), U(z)\} - E(z)] \quad \text{식 (26)}$$

단, 식 (24)의 $s \in (0,1)$ 는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식 (25)의 $h \in (0,1)$ 는 공공일자리 종사에 소요되는 시간, 식 (26)의 $w(z)$ 는 유형- z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임금이다. 노동시장 미참여 상태가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점에 더해 확장된 모형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공일자리 종사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새롭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미참여자와 구직자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차이, 그리고 공공일자리 종사자와 민간일자리 종사자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차이를 모형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공일자리 종사에 소요되는 시간 사이의 대소관계를 이론적으로 미리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해당 모수들의 값은 이하에서 수치 분석 수행 시 자료에 기반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높은 개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작을 것으로, 반면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낮은 개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수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식 (23)~(26)을 활용하여 $N(z) = U(z)$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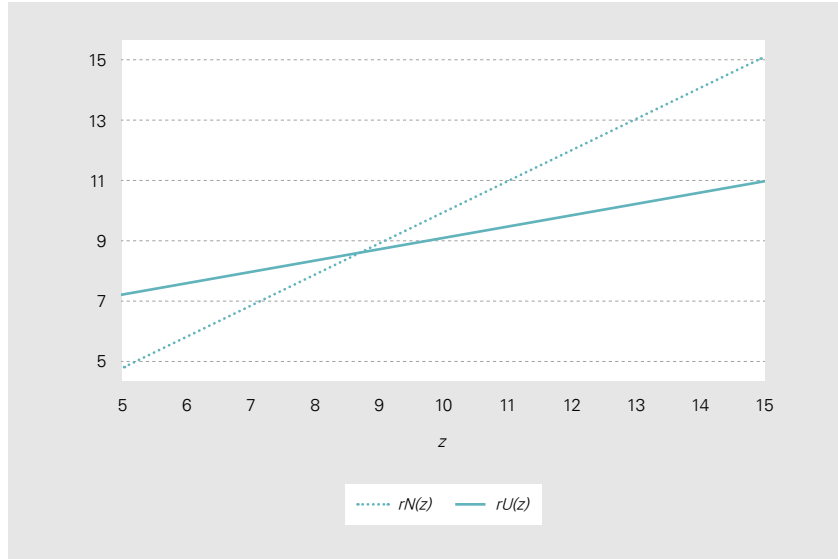
$$sz = \frac{g}{r + \delta_g}(\bar{w} - hz) + \frac{p(\theta)}{r + \delta_p}\beta(y - z) \quad \text{식 (27)}$$

식 (27)의 좌변은 일자리 탐색 비용, 우변은 일자리 탐색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좌변은 z 에 대한 증가 함수, 우변은 z 에 대한 감소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즉, z 의 값이 증가할수록 일자리 탐색 비용은 증가하되 그로부터의 기대 편익은 감소하는 셈인데, 식 (27)을 만족시키는 z 의 값을 z^* 라 할

노동시장 미참여 상태가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점에 더해 확장된 모형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공일자리 종사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새롭게 고려한다.

확장된 모형에서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높은 개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작은 반면,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낮은 개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크다.

[그림 3] 기대 효용 비교: 미참여 상태(N)와 구직 상태(U)



출처: 저자 작성

때, 현 모형에서 $z > z^*$ 인 개인들은 노동시장 미참여 상태(N)를, $z < z^*$ 인 개인들은 구직 상태(U)를 각각 선택하게 된다([그림 3] 참조).

마지막으로 빈 민간일자리의 기대 이윤을 V , 유형- z 개인으로 채워진 민간일자리의 기대 이윤을 $J(z)$ 라 하면, 제III장에서의 식 (9)와 식 (10)에 대응되는 수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rV = -c + q(\theta) \left[\int \frac{u(z)}{\int u(z)} J(z) z - V \right] \quad \text{식 (28)}$$

$$rJ(z) = y - w(z) + \delta_p [V - J(z)] \quad \text{식 (29)}$$

이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V=0$ 이라 가정하면, 식 (28)과 식 (29)를 결합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frac{c}{q(\theta)} = \int \frac{u(z)}{\int u(z)} \cdot \frac{y - w(z)}{r + \delta_p} dz \quad \text{식 (30)}$$

2. 모수 설정

수치적 분석을 위해 모형의 모수들은 2023년 기준 월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설정값 및 설정기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모수들은 실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가령 공공일자리 공급량 ℓ_g 의 값은 2023년 실제 공급량 60.8만개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출된 2023년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설정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임금 \bar{w} 는 2015년 공공일자리 임금을 1로 정규화하고 물가수준 변동¹³⁾을 반영하여 그 값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공공일자리 종료율 δ_g 의 값은 공공일자리 평균 활동기간이 11개월이 되도록 $0.091 (\approx 1/11)$ 로 설정하였다. 공공일자리 근무시간 h 의 경우에는 실제 월 근무시간(30시간)을 민간일자리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그 값을 설정하였는데, 민간일자리 평균 근무시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로부터 산출하였다. 동일한 자료로부터 민간일자리 평균 근무기간(11개월) 역시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모형에서의 민간일자리 종료율 δ_p 의 값을 설정하였다. 한편 결합함수 $M(u, v) = mu^{1-\eta}v^\eta$ 에서의 효율성 m 의 경우 (다른 모수들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직자들의 월간 구직확률이 50%가 되도록 그 값을 0.5로 설정하였다.¹⁴⁾

모형에서 일자리 탐색 비용(s), 민간일자리 생산 수준(y), 빈 민간일자리 유지 비용(c), 여가 효용의 평균(μ)¹⁵⁾을 나타내는 모수들의 경우 가용자료에 기반하여 단순히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의 구직자 수(u),¹⁶⁾ 미참여자 수(ℓ_n), 공공일자리 임금 대비 민간일자리 임금(w/\bar{w})이 자료상 실제 관측되는 값들과 최대한 일치되고 모형에서의 구인배율(θ)이 1이 되도록 (s, y, c, μ)의 값을 설정하였다. 고려되고 있는 모형 내 각 모수와 각 적률(moment) 사이에 일대일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료상 실제 관찰되는 적률들의 값을 모형이 최대한 유사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수들의 조합을 수치 분석에 사용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하 수치 분석에서는 $(s, y, c, \mu) = (0.156, 9.587, 6.894, 17.104)$ 로 각 설정되었다.

끝으로 모형 내 이자율(r)의 값은 연간 이자율이 4%가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민간일자리 종사자의 협상력(β) 및 결합함수의 탄력성(η)은 기존 문헌들을 따라 그 값을 0.5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수치적 분석을 위해 모형의 모수들은 2023년 기준 월 단위로 설정되었다.

13)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로부터 산출되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변동을 기준으로 함

14) 참고로 최인혁·조희평(2023)은 65~74세 고령층의 월간 구직확률을 48.6%로 추정한 바 있다.

15) 개인별 여가로부터의 효용 z 는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이때 $\mu > 0$ 는 해당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모수이다.

16) 고령층의 경우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간 경계가 상대적으로 더 모호할 수 있다. 이에 이하 수치 분석에서 자료상 구직자 수는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계산하였음을 밝혀둔다.

모수들의 값이

설정된 모형은

실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표 3> 모수 설정값 및 설정기준(2023년 기준, 월 단위)

모수	기호	설정값	설정기준
공공일자리 공급량	ℓ_g	0.064	65세 이상 인구 ¹⁾ 대비
공공일자리 임금	\bar{w}	1.148	정규화 및 물가수준 변동 반영 ²⁾
공공일자리 종료율	δ_g	0.091	공공일자리 평균 활동기간: 11개월
공공일자리 근무시간	h	0.220	민간일자리 평균 근무시간 ³⁾ 대비
민간일자리 종료율	δ_p	0.091	민간일자리 평균 근속기간: 11개월 ⁴⁾
결합함수 효율성	m	0.500	월간 구직확률: 50%
탐색 비용	s	0.156	구직자 수 = 0.030 ⁵⁾ 미참여자 수 = 0.597 ⁵⁾ 구인배율 = 1 $w/\bar{w} = 7.222^5)$
생산 수준	y	9.587	
빈 민간일자리 유지비용	c	6.894	
여가 효용 평균	μ	17.104	
이자율	r	0.003	연 이자율 4%
민간일자리 종사자 협상력	β	0.500	기준 문헌
결합함수 탄력성	η	0.500	

주: 1)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산출
 2) 2015년 공공일자리 임금을 1로 정규화하고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
 3)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7, 2019, 2021년 민간일자리 평균 근무시간의 평균을 계산
 4)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7, 2019, 2021년 민간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의 평균을 계산
 5) 통계청,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상 65세 이상 평균소득 195만원에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
 출처: 저자 작성

모수들의 값이 설정된 모형은 실제 노동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가령 모형의 정상 균형에서 전체 고령층의 28.4%가 민간일자리 종사자, 60.0%가 노동시장 미참여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수치인 30.9% 및 59.7%와 비교해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모형 내 구직자 수(u) 및 실업률($u/(1-\ell_n)$)은 현실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인데, 이하 수치 분석 결과 해석 시 이를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3. 분석 결과

공공일자리 공급량, 활동비, 활동기간 등의 가상적 변화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우선 공공일자리 수(ℓ_g)의 증가는 민간일자리 임금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 이는 제Ⅲ장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현재 공공일자리 임금이

17) 최인혁·조희평(2023)은 공공일자리 수 증가가 민간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나, 해당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 따라 공공일자리 공급량의 확대가 민간일자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¹⁸⁾ 나아가 이론 분석에서 예측되었던 바와 같이 공공일자리 수 증가는 구직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할 때 구직자 수는 0.3명 감소할 것으로 모형은 예측하고 있다. 다만 구직자 수와 더불어 민간일자리 종사자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공일자리 수가 2023년 현재 대비 1% 증가할 때 민간일자리 수가 현재 대비 0.2% 감소하는 수치 분석 결과를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공일자리 활동비(\bar{w})의 상승은 민간일자리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일자리 활동비의 상승(하락)은 구직자들의 유보임금 상승(하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일자리 임금은 공공일자리의 활동비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활동비의 상승은 공공일자리 근로조건 개선이라 할 수 있는데, 식 (27)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 공공일자리 활동비 상승이 (공공일자리 수가 불변인 상황에서) 노동시장 참여자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구직자와 민간일자리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하게 된다.

<표 4>는 공공일자리 활동기간($1/\delta_g$)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정책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치 분석에 활용된 모형에서 공공일자리의 경우 별다른 마찰 없이 노동시장 내 구직자들에 의해 항상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됨에 따라 모형 내에서 공공일자리 종료율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활동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내 구직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δ_g 값의 감소로 공공일자리 신규 취업률이 감소하게 되면서 민간일자리 임금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끝으로 공공일자리 관련 정책적 변화 대신 경제 내 개인들의 여가 효용 평균(μ)이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분석 결과도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μ 의 값이 현재보다 50% 높을 경우 고령층의 고용률이 25.3%가 될 것으로 모형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기준경제의 고용률 34.8%에 비해 9.4%p 낮은 것으로, 고령층의 자산이나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¹⁹⁾에 근접해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반사실적 분석 결과라 하겠다.

공공일자리 수 증가는
구직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할 때
구직자 수는 0.3명
감소할 것으로
모형은 예측하고 있다.

18) 참고로 공공일자리 수 증가는 노동시장 미참여자 수를 소폭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여가 효용 수준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 역시 민간일자리 임금 감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 OECD(2023, p. 187)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6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평균(24.7%)의 2배 수준이다.

<표 4> 수치 분석 결과 요약

통계량 ¹⁾	관측치	기준 경계	ℓ_g			\bar{w}			δ_g			μ		
			0.061	0.067	0.070	0.574	1.722	2.296	0.167	0.056	0.042	12.828	21.380	25.656
ℓ_g	0.064	0.064	0.061	0.067	0.070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ℓ_p	0.309	0.284	0.286	0.281	0.279	0.280	0.287	0.290	0.284	0.284	0.284	0.284	0.284	0.189
u	0.030	0.052	0.053	0.051	0.049	0.048	0.055	0.059	0.052	0.052	0.052	0.052	0.052	0.032
ℓ_n	0.597	0.600	0.600	0.601	0.601	0.608	0.593	0.587	0.600	0.600	0.600	0.600	0.600	0.715
실업률	0.074	0.129	0.132	0.127	0.124	0.123	0.136	0.142	0.129	0.130	0.130	0.130	0.130	0.111
고용률	0.373	0.348	0.347	0.349	0.349	0.344	0.351	0.354	0.348	0.348	0.348	0.348	0.348	0.253
v		0.052	0.052	0.052	0.052	0.054	0.050	0.047	0.052	0.051	0.051	0.051	0.051	0.037
θ		1.001	0.976	1.026	1.051	1.116	0.898	0.807	1.007	0.992	0.992	0.992	0.992	1.178
$1/p(\theta)$		1.999	2.025	1.975	1.951	1.893	2.110	2.227	1.993	2.008	2.015	2.015	2.015	1.842
$1/q(\theta)$		2.001	1.976	2.026	2.051	2.113	1.895	1.796	2.007	1.992	1.985	1.985	1.985	2.171
\bar{w}		1.148	1.148	1.148	1.148	0.574	1.722	2.296	1.148	1.148	1.148	1.148	1.148	1.148
w		8.291	8.307	8.274	8.258	8.218	8.359	8.423	8.287	8.296	8.300	8.300	8.300	8.180
w/\bar{w}		7.222	7.236	7.208	7.193	14.317	4.854	3.668	7.218	7.226	7.230	7.230	7.230	7.126
평균임금		6.977	7.053	6.901	6.825	6.796	7.150	7.316	6.974	6.981	6.985	6.985	6.985	6.405
구축 효과 ²⁾	$(d\ell_p/d\ell_p)/(d\ell_g/d\ell_g)$		-0.177	-0.179	-0.180									
	$d\ell_p/d\ell_g$		-0.785	-0.794	-0.798									
	$du/d\ell_g$		-0.347	-0.342	-0.339									
	$d\ell_n/d\ell_g$		0.132	0.136	0.138									

주: 1) 각 통계량의 정의 및 산출방법 등은 본문의 내용을 참조
 2) $d\ell_p/d\ell_p$, $d\ell_p/d\ell_g$, $du/d\ell_g$, $d\ell_n/d\ell_g$ 은 각각 공공일자리 수, 민간일자리 수, 구직자 수, 노동시장 미참여자 수의 변화량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V. 마치며

본 연구는 지난 2004년 사업 개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사업 목표량과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수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2024년 현재 10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2조 2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Ⅲ장에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 모형을 설계·분석함으로써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경우에 따라 구직자 수의 감소가 아닌 증가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이어 공공일자리 공급량, 활동비, 활동기간 등의 변화가 고령층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 수가 2023년 현재 대비 1% 증가(감소)할 때 민간일자리 수가 현재 대비 0.2% 감소(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정책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의 이론적·수치적 분석 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민간일자리 종사자와 구직자 수의 변동을 유발하는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에 앞서 해당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나아가 실제 발현된 영향에 대한 엄밀한 사후 평가 역시 뒤따라야 함을 말해준다. 즉, 공공일자리 공급량 확대 또는 활동비 상향 조정 등을 실제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정책 변화들이 민간일자리 창출량 또는 임금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정책 추진 여부 내지 강도를 신중히 결정하는 동시에, 정책 변화 이후에는 노동시장 성과 또는 후생 등의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엄밀히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가 정책당국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에도 이와 같은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2021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그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이 다각도로 분석·제시된 바 있다(운동열 외, 2022). 다만 향후 이와 같은 평가 체계가 더욱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령자 개인 단위로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다. 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정보 등을 개인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데(박경하 외,

본 연구의
이론적·수치적
분석 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민간일자리 종사자와
구직자 수의 변동을
유발하는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저임금 공공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측면을 강화하는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 내용을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3), 해당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고령자 개인별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스템상 축적된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정교화된 사업 평가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 역시 필요하다. 가령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 일자리의 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향후 단순 업무 위주의 저임금 공익활동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일자리 수 및 임금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뿐더러,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진 신고령층(1955~1963년생)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저임금 공공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감사원, 202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측면을 강화하는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 내용을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내지 후속연구 방향을 언급하는 가운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 우선 본 연구의 모형에서 공공일자리 취업은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공일자리 또는 민간일자리 취업만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모형에 반영한 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모형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상태와 미참여 상태 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역시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작업 역시 후속연구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고령층 노동시장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년층 또는 중장년층과의 대체·보완 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공공일자리 창출비용 역시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사원, 「감사보고서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I(노후소득보장 분야) -」, 2021.
- 고용노동부,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2024. 4. 17.
- 김수린·배지영·안서연·허선영·김혜인,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 박경하·남기철·강은나·김수린·배재운·김성용·이창숙·박준혁,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 박경하·최유진·강지원·진성진·김지민·도화정, 『정부 일자리 정책의 노인일자리 연계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보도참고자료, 2024. 1. 18.
- _____,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1. 일반회계)」, 2024.
- 윤동열·주무현·고혜원·김유빈·강지원·김지운·정동열, 『20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직접일자리 사업군』, 기획재정부, 2022.
- 이대창·문외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5.
- 최인혁·조희평,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 2023.
- Algan, Y., P. Cahuc, and A. Zylberberg, “Public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Economic Policy*, 17(34), 2002, pp. 7~65.
- Behar, A., and J. Mok, “Does public-sector employment fully crowd out private-sector employment?,”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3(4), 2019, pp. 1891~1925.
- Cho, H, and I. Choi, “The Labor Market Impact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Evidence from Korea,” Manuscript, 2024.
- Garibaldi, P., and E. Wasmer, “Equilibrium search unemployment, endogenous participation, and labor market flow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4), 2005, pp. 851~882.
- Holmlund, B., and J. Linden, “Job matching, temporary public employment, and equilibrium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1(3), 1993, pp. 329~34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2023.

Pries, M., and R. Rogerson, "Search frictions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3(5), 2009, pp. 568~587.

Ranzani, M., and M. Tuccio, "The impact of public employment on labour market performance: Evidence from African coun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24(5), 2017, pp. 298~301.

OECD Going Digital Toolkit, "Public spending o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s a share of GDP," <https://goingdigital.oecd.org/en/indicator/42>, 검색일자: 2024. 6.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_____,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_____, 「일자리행정통계」, 2022.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각 연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부표 1>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목표 및 실적

(단위: 백만원, 개)

연도	예산 (국비)	목표량	창출 실적 ²⁾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⁵⁾	민간형			기업 연계형 ⁶⁾			
				공익 활동 ³⁾	재능 나눔 ⁴⁾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⁶⁾		시니어 직능클럽 ⁷⁾		
2004 ¹⁾	21,268	25,000	35,127	32,173			1,748	1,206					
2005	27,228	35,000	47,309	42,745			3,633	931					
2006	59,868	80,000	83,038	73,712			7,459	1,867					
2007 ¹⁾	85,446	110,000	115,646	103,415			9,630	2,601					
2008	96,073	117,000	126,370	110,389			11,530	4,451					
2009 ⁹⁾	160,247	196,000	222,616	195,798			17,757	9,061					
2010	153,147	189,183	216,441	191,676			15,984	8,781					
2011	166,093	200,000	225,174	194,480			15,486	10,380	3,643	913	272		
2012	185,410	220,000	248,395	217,710			16,190	9,349	3,612	1,126	408		
2013 ⁹⁾	247,688	240,000	261,598	227,439			17,685	10,397	4,500	1,118	459		
2014	305,190	310,000	336,431	269,244	30,609		19,764	10,514	5,103	721	476		
2015 ⁹⁾	358,063	370,000	385,963	305,140	40,847		22,889	9,730	6,176	716	465		
2016 ⁹⁾	403,486	418,900	429,726	290,625	40,163		77,734	12,557	6,730	1,545	372		
2017 ⁹⁾	523,193	466,582	496,200	359,932	44,714		64,573	17,039	5,268	1,100	232		3,342
2018	636,859	513,000	543,926	405,134	52,153		54,585	20,067	5,686	1,468	240		4,593
2019 ⁹⁾	922,761	640,000	684,177	504,206	47,367	23,548	66,972	27,718	7,349	1,344			5,673
2020 ⁹⁾	1,329,649	740,100	769,605	554,101	30,710	45,764	68,729	53,439	15,547	1,315			
2021 ⁹⁾	1,330,679	821,136	836,172	610,656	15,152	63,058	40,539	70,334	34,434	1,999			
2022 ⁹⁾	1,414,185	846,000	881,535	626,391	-	75,012	42,803	83,290	46,570	2,489			

주: 1) 2004년 '공공참여형'은 '공익형', '공익강사형'은 '교육형', '시장참여형'은 '시장형'으로 분류, 2007년 '통합형'은 '시장형'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분류, '지역혁신사업'은 복지적 성격
이 강하여 '복지형(노노케어)'로 분류하여 운영
2) 2015년 이전 창출실적: 실참여기간을 9개월로 환산하여 추정한 자립수, 2015년 이후 창출실적은 '공익활동 주도포기자 / 시장형 및 취업일선형 실참여인원'으로 산출
3) 과거 지역형 '공익활동'으로 구분하던 사업 중 근로자성이 존재하는 8개 사업(모니터링, 주장차질서 계도, CCTV 상시관제, 스피드 교통신원, 폐원수과 재활동, 자전거 모관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은
2016년 이후 전문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구분함;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공익활동 사업유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의 4가지로 구분
4) 재능나눔의 창출실적은 2015년 이후 '누적참여자 수 - 중도포기자'로 산출, 2022년 해당사업 중단으로 실적 없음
5)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이 2022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실시
6) 고령자친화기업 실적(누적참여자 수는 만 60세 이상 참여자 수로 산출
7) 2016년부터 '시니어직능클럽'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분류되면서 2019년 이후 관리 기업이 없어 실적 없음
8)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실시, 창출실적은 2017년부터 실참여 인원으로 산출, 2020년 기업연계형 사업이 '시니어인턴십'으로 통합되었으며, 인력파견형을 '취업일선형'
으로 통합
9) 추경 포함



특집

+ 2024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양순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01

2024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I. 2024년 세법개정 배경 및 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국 대비 물가가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경기 상황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높은 물가와 금리의 영향이 누적되며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현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는 가속화되는 반면, 1990년대 7.8%를 기록했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1%, 2020년대 2.0%로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어 구조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반 여건 아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낡고 오래된 제도를 개편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II.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가.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가속상각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과 연관된 일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R&D 세액공제 적용 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기술에 실제 투입한 시간에 따라 인건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유인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7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용 유인효과와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한

다. 상시근로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제도를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을 통해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4년 1월 4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나.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우선,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까지 확대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제외)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2배 확대하여 최대 1,200억원까지 높인다.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입한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폐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를 폐지한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다. 자본시장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나라의 낮은 주주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은 경영자와 투자자 간 유인구조를 일치시켜 ‘주주환원 확대 → 보유 주식 수익률 상승 → 주식시장 성장 및 기업 가치 상승’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여,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

상인 서민·농어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일반 투자형 ISA에 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2. 민생 경제 회복

가. 결혼·출산·양육 지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여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2024~2026년 3년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또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하여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

원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나.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 한도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하고,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적용한다.

3. 조세체계 합리화

가.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더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유지되면서 세부담이 높아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선 상속·증여세율의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등장한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19. 시행)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

나.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강화하였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전자신고율이 97%를 상회하여 전자신고 정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한다. 아울러 올해 일몰예정인 조세특례제도는 조세지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유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9건 중 7건은 적용을 종료하고, 8건은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도입한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

해 도입된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적용 대상을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면서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다.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제기되었던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성실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사를 통해 월별로 성실신고 확인 및 확정 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가. 납세자 편의 제고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건수가 약 1.3억건을 달성하는 등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를 효율화한다. 2026년부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가 관세청에 업체등록 후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주문번호, 구매일자 등 거래정보를 미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 신고 및 선별 검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 납세자 권익 보호


거주자·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 해외금융계좌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중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면제했으며, 소송·상호합의 등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다른 과태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완화한다. 현재 과소·미신고 시 위반금액의 10~20%(20억원 상한)를 부과하고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을 과소·미신고 시에는 위반금액의 10%(10억원 상한)로, 거짓·미소명 시에는 10%로 완화한다.

한편,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할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자기방어권 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Ⅲ.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4.4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에 기인하는

바,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연도별로는 2025년 약 6천억원, 2026년 약 3조 9천억원이 감소하여 내년도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 세제개편에 포함된 총 15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02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okwon@kipf.re.kr

I. 들어가며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네 가지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큰 틀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의 세법개정안 기본방향과 유사해 보인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정책 기본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올해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등 최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이 담겨있다. 본고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기본방향별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필자 개인의 의견을 덧붙이도록 한다.

II. 경제의 역동성 지원

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위해 제시된 추진전략으로는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지원하여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역동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가.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

정부는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각각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하여 투자 분야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정도를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3조 7,231억원과 2조 1,997억원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감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도입 당시 36개에서 2024년 현재 66개로 증가하였으며, 신성장·원천기술은 2017년 도입 이후 157개에서 270개로 증가하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향후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상향한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대비 증가한 투자

증가분²⁾에 대하여 3~4%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공제율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³⁾ 유예기간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림 1]을 보면, 개정안의 공제율이 현행 제도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인건비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인력은 실제 연구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인력개발비의 경우 강사료 등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도 공제대상이 되며, 그 외에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⁴⁾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 기업의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활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존재하여 실제 연구 및 투자 규모가 사회적 최적보다 적은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김빛마로 외, 2021; 김학수 외, 2018). 문제는 현 시점에 어떤 분야에서 시장실패로 인해 연구 및 투자가 적정 수준에 비해 부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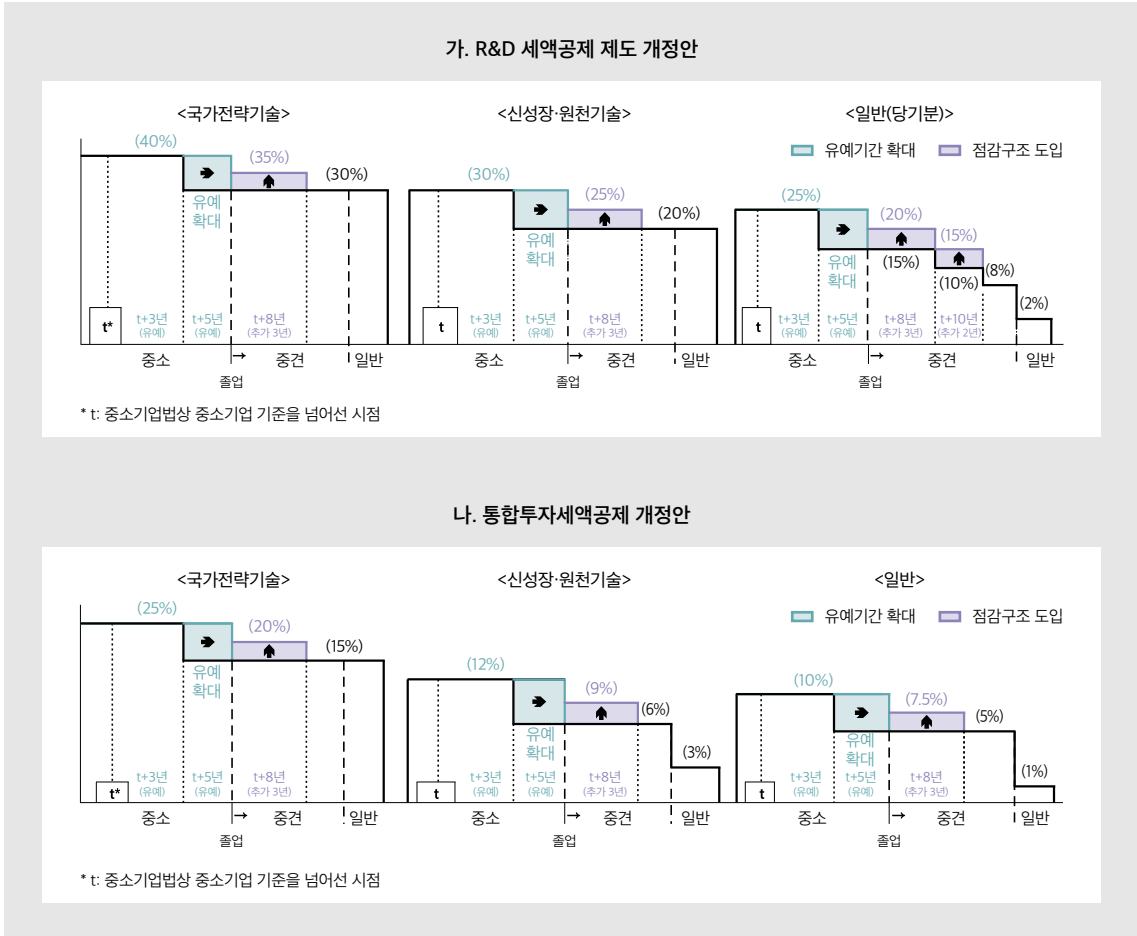
1)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 전망치는 각각 4조 8,129억원과 5조 6,832억원이다.

2) 당해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한 금액

3)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경우 최장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4) 기존에는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하여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였다.

[그림 1] R&D,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024. 7. 25, p. 7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⁵⁾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물론,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핵심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목록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의 적격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김빛마로 외 2021). 미국의 경우 기초연구 및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중국의 경우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0%p 경감한다.

<표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

(단위: 만원, %)

현행					개정안						
① 기본공제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규모					
	중소 (3년)		중견 (3년)	대 (2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계속 고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② 추가공제					탄력 고용	임금증가율 3%~20%		증가분의 20%	10%	-	
구분	공제액		중견			임금증가율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구분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복귀자(1년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개요」, 2024. 7. 25, p. 9.

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정부는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⁶⁾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기간제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⁷⁾ <표 1>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계속고용’으로 분류하고, 기간제, 단시간(전체) 등 계속고용 이외의 고용을 ‘탄력고용’으로 분류한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총지원액을 확대하고, 최대 3년에 걸쳐 지원하던 것을 2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탄력고용의 경우 인건

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임금증가율에 따라 정률 지원한다. 개정안의 지원 대상 확대는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지원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고용 형태를 세제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⁸⁾

아울러 정부는 사후 관리 폐지, 고용 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를 간소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공제연도 이후 2~3년 내 고용이 줄어들면 세제 지원분이 추징된다. 그런데, 이 추징 규정이 복잡하여 기업이 채용시점에 공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고용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6)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7) 현행 제도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정년퇴직자,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 경향신문, 「초단기 일자리」 고용도 세제 혜택... '질 낮은 일자리 증가 우려', 2024. 7. 25.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을 폐지하고⁹⁾,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 유인을 제공한다. 고용 인원 계산도 단순화된다.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계산법을 과세연도 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바꾼다. 이러한 개정안은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고용 유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Cahuc et al.(2019)¹⁰⁾ 등의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되지 않고 일시적이어야 함을 보였다.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운영기간은 202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일몰이 관성적으로 연장된다면 경제주체들은 세제지원을 항구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제도의 고용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최인혁·문지웅, 2023).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고용의 양적 지표를 고려하여, 경기 변동에 따라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고용의 양적 지표가 악화된 경우에만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는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앞서 제기된 고용의 질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2. 기업경쟁력 제고

가.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편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정부는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까지 확대된다.¹¹⁾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일반 기업보다 2배 확대하며,¹²⁾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¹³⁾를 폐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은 가업상속과 그 외의 일반상속을 세법상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와 구별된다.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가업이 유지되고 성장하여 고용, 생산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절감의 타당성은 가업승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9) 단, 중견·대기업은 각각 10명과 20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Cahuc et al.(2019)은 프랑스의 고용 세제지원을 분석하였고, 최인혁·문지웅(2023)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분석하였다.

11) 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12) 현행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이다.

13)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표 2>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요건

구분	세부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밸류업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 5년간(2025~20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스케일업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2025~20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 5년간(2025~20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024. 7. 25, p. 11.

이론적으로 가업상속 및 가족기업의 유용성은 명확하지 않다. 가족기업은 장기적인 성과를 중요시 하고, 대리인 비용이 낮으며, 습득하기 어려운 기업 특유의 지식·인맥 등의 계승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족의 이익을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수 있고, 경영자의 전문성 부족,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가족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¹⁴⁾ 예컨대, 미국의 가업승계 자료를 이용한 Pérez-González(2006)에서는 가족경영이 영업이익, 시가-장부가 비율 등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춘 500대 기업의 자료를 이용한 Villalonga and Amit(2006)에서는 가족기업에서 선대의 후손(descendants)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경우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이

용한 김동근(2023)에서는 기업승계가 기업투자과 수익성 등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요약하면, 정부가 가업상속 지원제도에 대하여 까다로운 사후의무요건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업승계를 사전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관련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요건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고용 및 투자 증대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경우 가업상속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일반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간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공제 등을 통한 세부담 인하보다는 연부연납제도¹⁵⁾의 납부기간을 늘리거나 납부유예제도를 확대

14) 김동근(2023)에서 정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15) 상속세 신고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상속세가 기업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가업상속 관련 지원 확대는 납부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지난 7월 3일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데, 세계 인센티브를 통해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¹⁶⁾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으로¹⁷⁾ 주주환원을 확대한¹⁸⁾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개인주주의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일부 분리과세를 허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¹⁹⁾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개인주주가 받는 현금배당의 일정 비율에 대해 9% 원천징수 또는 25% 분리과세를 허용한다.²⁰⁾

Chetty and Saez(2006)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 인하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이러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배당성향 외에도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지배구조 문제, 회계의 불투명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김준석·강소현, 2023),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기업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배당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Korinek and Stiglitz, 2009).²¹⁾ 근본적인 기업 가치 증대는 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세 감면 혜택이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있을 수 있다(이상엽·홍우형, 2017).

1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17)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18)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19)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20) 현행 14% 원천징수 또는 최대 45% 종합과세

21) Korinek and Stiglitz(2009)에서는 기업의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시적인 배당세 감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세율이 낮은 시기에 배당 지급을 하도록 유도한다. 현금 보유액이 감소한 기업은 대규모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자본 부족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 결과 총투자액이 감소할 수 있다.

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투자 형태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 중립성이 저해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이상엽 외, 2021). 따라서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는 투자 상품별 과세 방식을 통일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현행 조세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²²⁾를 고려하여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시된 추진전략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있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가. 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혼인율 저하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²³⁾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출산율이 전체 합계출산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율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²⁴⁾

결혼세액공제의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세액공제가 혼인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현재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유도하거나, 이미 결혼을 계획 중인 사람들의 혼인신고 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²⁵⁾ 결혼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의 경우 소득의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제와 재정예

22) 한국경제, 「금투세 시행 반대 49.9%...세금 부담, 외국인과 형평성 우려」, 2024. 8. 15.

23)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 7. 25, p. 22

24) 생애 1회 한정

25) 설문 실험을 이용하여 결혼 및 출산 의향의 원인을 분석한 남윤미·황인도(2023)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연상케 한 집단의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통계군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주거비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심각한 위험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대응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²⁶⁾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취지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도가 추진된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과세 제도가 조세회피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과세 제한 규정을 두었지만, 여전히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의 상여금을 예정된 액수보다 낮추고 대신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고액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²⁷⁾

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정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만 8-20세 자녀에 대하여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인 경우 총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가한다. 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이 10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자녀세액공제 금액의 확대는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가.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표 3>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식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에는 변화가 없으며, 소득요건 상향에 따라 점감구간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확대는 가구유형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개편으로 판단된다(전병목·전영준, 2022).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단독가구 2인이 소득 변화 없이 혼인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격차는 맞벌이 가구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자녀 양육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 예컨대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의 경우 올해 예비타당성평가가 수행된다(2024 조세지출 기본계획).

27) 서울경제, 「과세 대원칙 깨고…‘부영 1역’ 등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 3. 6.

<표 3>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개정안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p. 43.

나.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정부는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 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재고용한 기업은 통합고용세제에 따라 일반 채용보다 더 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²⁸⁾ 개정안에서는 성별 및 업종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퇴직 사유에 기존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외에도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 자녀 양육 시 적용되던 8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성별 요건의 폐지는 남성 육아 휴직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업종 요건의 폐지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자녀 외 가족구성원 돌봄을 제도 대상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²⁹⁾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 대표자 공제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액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³⁰⁾에서 공제되며,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한도가 4천만원 이하의 경우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법인대표자의 소득공제 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김학수 외(2016)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규모가 과도할 수 있으며, 지원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28)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50만원

29)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공제금은 임류나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

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³¹⁾ 향후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타당성과 조세지출 혜택의 귀착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신설된 이후 일몰이 1년씩 연장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한다. 제도 신설 당시, 감염병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운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권성준·최인혁(2023)에서 본 세액공제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료 감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운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제시된 추진전략으로는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가 있다.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가.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저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1997년 도입 당시 5억원이던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³²⁾ 자녀공제 금액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³³⁾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이 물가 및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요국 대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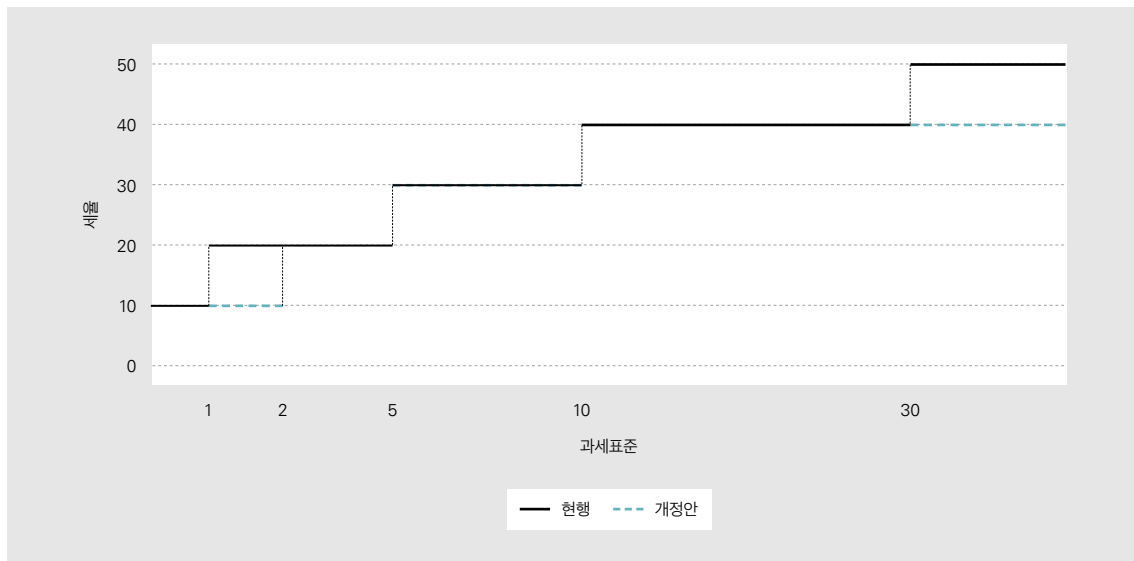
31) 2016년 당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공제대상은 사업소득 및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의 소기업 대표의 근로소득이었다.

32)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p. 63

33) 납세자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림 2]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개정안

(단위: %, 억원)



출처: 저자 작성

것은 적절하다. 공제금액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속세 통합세액공제액³⁴⁾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영국은 2000년 이후 상속세 면세점을 10회 이상 인상하였다.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을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공제금액을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자산가격의 상승과 공제금액 유지로 인해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2000년 0.66%에서 2022년 4.53%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자산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선화, 2024).³⁵⁾ 상속세의 자산 격차 및 기회의 불평등 완화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자산가격 상승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예: 미국 40%)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조세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은 해외 이주 등을 통해 조세의 비효율성

3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이 통합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35) 이선화(2024)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8년 기간에 OECD 국가의 상위 10%와 그 다음 50%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13%와 6%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하위 40%의 순자산 규모는 12% 감소하였다.

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36), 37)} 재정학의 최적조세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세구조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적정 상속세 수준은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외에 재분배에 대한 사회 선호, 유산의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Farhi and Werning, 2013; Piketty and Saez, 2013). 예컨대 자산 불평등이 심하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심이 큰 사회에서 적정 상속세 수준은 높게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에 의해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어 왔다(안경봉·박민, 2023; 최명근, 1993).³⁸⁾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고 각종 공제도 해당 상속인의 재산에만 적용되어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이 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된다면 현재의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의사결정 왜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세제 개편 시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세부담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이 전자산가액에 대해 증여보다 상속이 세부담 측면

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경제 주체들이 자산 이전을 상속 시점까지 미루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강성훈·오종현, 2021).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되어 세부담 차이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다시 세부담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이후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시행 시점을 2027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하는 것이다. 과세 유예에 대해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³⁹⁾의 시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가 2027년이라는 점도 과세 유예 결정에 고려되었음을 부연하였다. 2023년 11월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이하 CARF)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였다. CARF는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36) 조선일보, 「[기고] 과도한 상속세가 국부 유출 부추긴다.」, 2024. 6. 28.

37) Moretti and Wilson(2023)에서는 미국 포브스 400대 부자들의 거주지 선택이 주(州) 상속세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상속세의 세수가 비용을 초과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상속세를 분석한 Brülhart and Parchet(2014)에서는 상속세에 따른 납세자의 주거지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38) 서울경제, 「상속세 과표 일괄 조정했어야...유산취득세 도입 못해 아쉬워」, 2024. 7. 30.

3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해 CARF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된다. 많은 기업에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자사 및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소득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었다.⁴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 및 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혜택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한다. 과세 한도 이내의 할인 혜택은 복리후생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는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예규 질의나 외부 자문 등의 필요성을 줄여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비과세·감면 정비

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해당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⁴¹⁾ 개정안에서는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50% 하향 조정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동준 외(2022)에서는 매출규모가 큰 사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과표양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⁴²⁾

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정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할 방침이다.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하고⁴³⁾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에 대한 공제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은 2022년 기준 99.5%, 99.6%, 97.1%에 이른다.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전자신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증대된 만큼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서면 신고 전환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김재진·기은선(2017)의 분석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는 종업원 할인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41) 2027년부터는 공제율이 1%로 인하될 예정이다.

42) 단, 김동준 외(2022)에서는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43)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정부는 납세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 10일로 한다. 이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기부 문화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⁴⁴⁾ 이에 초기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비중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정부는 해외직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통관제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전에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통관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⁴⁵⁾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⁴⁶⁾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검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관세청 인력으로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대신해,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관 과정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해외직구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I. 마치며

이상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정안은 역동적인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4조 3,5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 중 약 4조 원 이상이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6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총 15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44) 본 제도는 2025년 기부 받은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5)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46)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여건은 잠재성장률 둔화, 세입 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경제 활력 제고와 저출산 대응 등 올해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개편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21, pp. 73~107.

권성준·최인혁, 「상가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상가임차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분석』 제29권 제3호, 2023, pp. 147~208.

김준석·강소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KCMi 이슈 보고서, 2023.

김동근, 『고기업승계 유형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 분석』, 이슈 페이퍼, 산업연구원, 2023.

김빛마로·윤성주·윤성만,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성장·소원 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김재진·기은선, 『조세특례 심층평가: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 제도 연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_____,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김학수·우석진·반기범·박재성, 『조세특례 심층평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남윤미·황인도,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BOK 경제연구, 한국은행, 2023.

송경호·신상화, 「도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22, pp. 65~92.

안경봉·박민,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12권 제1호, 2023, pp. 307~345.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세무학연구』 제38권 제2호, 2021, pp. 221~260.

이상엽·홍우형,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17-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이선화,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 국가미래전략 Insight 96호, 국회미래연구원, 2024.

전병목·전영준,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연구보고서 22-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최명근,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3.

최인혁·문지웅,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3-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Brühlhart, Marius, and Raphaël Parchet, "Alleged tax competition: The mysterious death of bequest taxes in Switzerlan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1, 2014, pp. 63~78.

Cahuc, Pierre, Stéphane Carcillo, and Thomas Le Barbanchon, "The effectiveness of hiring credit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6.2, 2019, pp. 593~626.

Chetty, Raj, and Emmanuel Saez, "The effects of the 2003 dividend tax cut on corporate behavior: Interpreting the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2006, pp. 124~129.

Farhi, Emmanuel, and Iván Werning, "Estate taxation with altruism heterogene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013, pp. 489~495.

Korinek, Anton, and Joseph E. Stiglitz, "Dividend taxation and intertemporal tax arbitrag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1-2, 2009, pp. 142~159.

- Moretti, Enrico, and Daniel J. Wilson, "Taxing billionaires: Estate taxes and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ultra-wealth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5.2, 2023, pp. 424~466.
-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2021.
- Pérez-González, Francisco, "Inherited control and firm perform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2006, pp. 1559~1588.
- Piketty, Thomas, and Emmanuel Saez,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ation," *Econometrica* 81.5, 2013, pp. 1851~1886.
- Villalonga, Belén, and Raphael Amit, "How do family ownership, control and management affect firm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0.2, 2006, pp. 385~417.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024.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
- _____,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
- _____, 「조세지출예산서」, 2024.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2023. 12.
- 경향신문, 「'초단기 일자리' 고용도 세제 혜택…'질 낮은 일자리' 증가 우려」, 2024. 7. 25.
- 서울경제, 「과세 대원칙 깨고…'부영 1억' 등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 3. 6.
- 서울경제, 「상속세 과표 일괄 조정했어야…유산취득세 도입 못해 아쉬워」, 2024. 7. 30.
- 조선일보, 「[기고] 과도한 상속세가 국부 유출 부추긴다」, 2024. 6. 28.
- 한국경제, 「금투세 시행 반대 49.9%…세금 부담, 외국인과 형평성 우려」, 2024. 8. 1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자사주 매입에 대해 소비세 부과]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6월 28일, IRA에 따라 제정된 자사주 매입(Stock Repurchase)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 시행을 확정함¹⁾
 - 소비세 최종 규정은 2024년 6월 28일 발효되고 2024년 7월 3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사주 매입에 적용되며 공정가치의 1%를 부과함²⁾
 - 과세표준은 재매입한 주식의 공정가치에서 해당 과세연도 중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상계 규칙을 적용함
 -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환매, 연간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환매,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딜러의 환매, 뮤추얼 펀드(RIC)와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의 환매, 배

당 분배로 처리되는 환매 등 특정 유형의 취득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2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가 두 개 이상인 법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하나의 Form 720과 과세연도별 Form 7208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캐나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시행 관련 법안 통과]

- 캐나다 국왕은 2024년 6월 20일,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의 특정 항목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C-69를 승인함^{3), 4), 5)}
 - 법안 C-69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을 대상으로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함
 - 청정기술 투자는 30%, 청정수소 투자는 최

1) IBFD, "Treasury and IRS Finalize Regulations to Implement 1% Excise Tax on Corporate Stock Repurchases," 2024. 7.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02_us_1.html, 검색일자: 2024. 7. 10.

2) IBFD,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 Miscellaneous Taxes (Last Reviewed: 1 April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us_s_9.5.1.%23gtha_us_s_9.5.1., 검색일자: 2024. 7. 10.

3) PARLIAMENT OF CANADA, BILL C-69, 2024. 6. 19.,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4-1/bill/C-69/third-reading>, 검색일자: 2024. 7. 10.

4) Government of Canada, Budget 2024: Legislation to ensure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 receives Royal Assent, 2024. 6. 20.,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6/budget-2024-legislation-to-ensure-fairness-for-every-generation-receives-royal-assent.html>, 검색일자: 2024. 7. 10.

5) IBFD, "Canada Enacts Global Minimum Tax Act, Other Tax Measures in Bill C-69," 2024. 6.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1_ca_1.html, 검색일자: 2024. 7. 10.

- 대 40%까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특정 청정수소 프로젝트의 투자 자격을 갖춘 기업에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를 제 공함
 -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환급을 시작함
 - 자원봉사 소방관과 자원봉사 수색 구조원의 세액공제액을 2배로 인상함
 - 언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 제율은 4년 간 25%에서 35%로 일시적으로 늘리고, 대상 언론인 1인당 공제금액 한도는 5만 5천캐나다달러에서 8만 5천캐나다달러 로 상향함
 - 15% 광물탐사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함
 - 직원 소유 신탁에 사업을 매각할 경우 1천만 캐나다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Economic Statement Paper)」를 발표함^{8),9)}

- 금번 성명서의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인 2025년 예산안에도 담길 예정임
- 아일랜드의 2025년 예산안은 총 83억유로¹⁰⁾ 규모의 패키지로, 2024년 10월 1일에 아일랜드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추가 공공지출(additional public spending) 은 69억유로, 과세 조치(taxation measures) 는 14억유로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임
- 69억유로 규모의 추가 공공지출에는 보육, 의료, 주택,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가 포 함될 예정이며, 의료 서비스를 위한 15억유 로¹¹⁾의 추가 지출 등도 포함될 예정임
-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 세율 부과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14억 유로 규모의 조세 패키지를 통해 세액공제 및 세율 구간을 조정할 계획임



아일랜드

「2024년 여름 경제 성명서」 발표

- 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 7월 9일, 69억유로⁶⁾ 규모의 추가 공공지출과 14억유로⁷⁾ 규모의 과세 조치가 포함된 「2024년 여름 경제 성명서(Summer

[R&D 세액공제 인상 발표]

- 아일랜드는 2024년 7월 10일, 적격 R&D 지출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인 상하는 조치를 발표함¹²⁾
- 1차 연도에 적용 가능한 R&D 세액공제 금액을

6)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조 3,182억원임

7)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935억원임

8) IBFD, "Ireland - Government Proposes Tax Package of EUR 1.4 Billion in Budget 2025," 2024. 7.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0_ie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9) 아일랜드 정부, "Ministers Chambers and Donohoe publish Summer Economic Statement 2024," 2024. 7. 9., <https://www.gov.ie/en/press-release/ed03d-ministers-chambers-and-donohoe-publish-summer-economic-statement-2024/>, 검색일자: 2024. 7. 11.

10)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조 4,081억원임

11)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2,430억원임

12) IBFD, "Ireland - Revenue Raises R&D Tax Credit to 30% from 2024," 2024. 7.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5_ie_2.html, 검색일자: 2024. 7.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2만 5천유로¹³⁾에서 5만유로¹⁴⁾로 상향 조정함

- 신고 전 통지 요건(pre-filing notification requirement)을 도입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일랜드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신청 의향을 통지하여야 함
 - 신고 전 통지 요건은 R&D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하는 기업 및 과거 3개 회계기간 동안 R&D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프랑스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행정지침 발표]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4년 6월 19일,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세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8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함¹⁵⁾

- 프랑스 또는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프랑스 내에서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과세함¹⁶⁾
 -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용자 및 광고주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스트리밍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대금이 연 2천만유로¹⁷⁾를 초과하는 경우 그 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4%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2%임
-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세제도는 2024년도 재정법(예산안)에 의해 「조세일반법」에 도입되었으며,¹⁸⁾ 행정지침은 과세제도의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룩셈부르크

[「글로벌 최저한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6월 12일, OECD 필라 2와 관련하여 EU 최저한세지침(2022/2523)을

13) 2024년 7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74만원임

14) 2024년 7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549만원임

15) bofip, "AIS - Culture, communication et numérique - Taxes portant sur l'utilisation finale des réseaux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Taxe sur les locations en France de phonogrammes et de vidéomusiques destinés à l'usage privé du public dans le cadre d'une mise à disposition à la demande sur les réseaux en lign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4282-PGP.html?identifiant=BOI-AIS-CCN-30-60-20240619>, 검색일자: 2024. 7. 9.

16) IBFD, "Tax Authorities Launch Public Consultation on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Tax on On-Demand Music Streaming Services," 2024. 6.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0_fr_1.html, 검색일자: 2024. 7. 9.

17)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9억 460만원임

18) 프랑스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609 sexdecies C

이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임¹⁹⁾

-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국내 대규모그룹의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방법에 따라 회계기간의 차이를 조정해야 함
- 기업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효세율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을 과세소득으로 나눈 것임
 - 유로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구성원이 있는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국내 대규모그룹의 경우이며, 룩셈부르크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가산금액을 계산할 통화를 선택해야 함²⁰⁾
 - 구성기업이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가산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가산금액 계산에 사용된 회계기준에서 지정한 환산 규정을 적용해야 함
 - 2023년 12월 31일부터 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해외진출 초기의 첫 5년 동안 및 구성기업이 속한 국내 대규모그룹에 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첫 5년 동안 적격

소재국 추가세액은 부과되지 않음

- 기타 내용으로 이연법인세자산, 전환기사업연도 개시 전 자산 이전, 신고 기한이 있음
 - 이연법인세자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고려되며, 이연법인세자산을 고려하기 위한 사용되는 공식은 '이연법인세자산(회계계정)/이전 전환기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임²¹⁾
 - 전환기사업연도 개시 전, 2021년 11월 30일 이후 자산을 이전하는 구성기업들 사이에서 이전된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름
 - 자산 이전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취득한 구성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조정됨
 - 필라2와 관련한 신고 및 통지의 최종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이탈리아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규칙 발표】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4년 7월 3일, 제209/2023

19) IBFD, "Bill on Amendments to Minimum Taxation Law Submitted to Parliament," 2024. 6.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4_lu_1.html, 검색일자: 2024. 7. 2.

20) 이 선택은 5년간 유효하며, 5년의 기간 종료 시 달리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

21) 연도 중에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함

호에 의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규칙을 발표함^{22), 23)}

- 납세 대상은 이탈리아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의 연간 수익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대규모 국내 그룹에 속한 구성 법인임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총국내 초과이익에서 해당 법인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부과함
- 적격소재국 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DMTT)는 IIR(income inclusion rule) 및 UTPR(undertaxed profits rule)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계산됨
 - DMTT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이탈리아에 위치한 모든 구성 법인은 DMTT 납부 기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포르투갈

[자본 시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세금 패키지 승인]

- 포르투갈 의회는 2024년 6월 14일에서 7월 4일까지 자본 시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패키지에 포함된 관련 조세 조치들을 승인함
- 2024년 6월 25일 국내 자본 시장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 조치를 통과시킴²⁴⁾
 - 장기 보유 증권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를 통해, 거래가 허용된 증권 또는 기업 형태의 공개 집합 투자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개인소득세 소득공제를 적용함
 -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 취득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도입됨
 -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의 영주권을 위한 처분

<표 1> 포르투갈 장기 보유 증권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비율 및 실효세율

(단위: %)

보유 기간	개인소득세 공제 비율	실효세율(근사치) (기본세율 28%)
2년 이상 5년 미만	10	25
5년 이상 8년 미만	20	22
8년 이상	30	20

출처: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7-04_pt_1%23tns_2024-07-04_pt_1, 검색일자: 2024. 7. 12.

22)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Global minimum tax: disposizioni attuative riguardanti l'imposta minima nazionale," 2024. 7. 3., <https://www.finanze.gov.it/inevidenza/Global-minimum-tax-disposizioni-attuative-riguardanti-limposta-minima-nazionale/>, 검색일자: 2024. 7. 10.

23)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ecree on Domestic Minimum Top-Up Tax," 2024.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05_it_1.html, 검색일자: 2024. 7. 10.

24)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6-25_pt_2%23tns_2024-06-25_pt_2, 검색일자: 2024. 7. 12.

- 을 통해 획득한 자본 이득으로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 취득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 한도가 있는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해 과세 소득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6월 28일에는 퇴직 저축 플랜 및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과 관련한 상속 및 기부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승인함²⁵⁾

● 증권 투자자 및 대출 펀드에 대한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함

- 증권사 및 펀드의 주식 혹은 지분과 관련한 소득은, 해당 소득을 다른 유형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배당 또는 상황에 관계 없이 10%의 세율로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됨
- 그러나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됨

● 저가 임대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제도에 대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세 혜택을 적용함

- 다음 <표 2>와 같이 저가 임대에 할당된 적격 자산 비중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공제함
- 또한 집합투자제도와 관련하여 25% 초과 투자금액에 적용되는 0.0125%의 인지세 감

면세율이 25%를 초과하는 적격 자산에까지 적용됨

<표 2> 저가 임대에 할당된 적격 자산 비중에 따른 소득공제율

(단위: %)

적격 자산	소득공제율
5% 초과 10% 이하	2.5
10% 초과 15% 이하	5
15% 초과 25% 이하	7.5
25% 초과	10

출처: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7-04_pt_1%23tns_2024-07-04_pt_1, 검색일자: 2024. 7. 12.

■ 2024년 7월 4일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그룹 제도를 신설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패키지를 승인함²⁶⁾

- 법인세 세율을 2027년까지 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소득의 첫 5만유로²⁷⁾에 대해 3년에 걸쳐 현재 세율 17%에서 12.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함
- 2025년부터 중점 사업(concentration operation) 영업권 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분 취득과 같은 자산 및 영업 분야까지 확대함
- 익금불산입(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 보유 금액을 최소 2년간 10%에서 5%로 축소하여 접근성을 확대함
- 기업 자본화에 기여하는 개인의 자본 이득 및

25)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7-04_pt_1%23tns_2024-07-04_pt_1, 검색일자: 2024. 7. 12.

26) IBFD, "Portugal - Government Approves Tax Package to Boost Economy, Proposals Include CIT Rate Reduction, Formation of VAT Groups," 2024.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7-05_pt_1, 검색일자: 2024. 7. 12.

27)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천 460만원임

배당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됨

- 중앙 집중식 재무 관리 운영에 대한 인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 간 자금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캐시 풀링(cash pooling)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그룹 개념을 도입하여 부가차치세 환급 절차 축소 및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함
- 부가가치세 현금 회계시스템 매출액 기준이 현행 50만유로²⁸⁾ 미만에서 200만유로²⁹⁾로 확대됨
- 기업 R&D에 대한 세제 혜택제도(Sistema de Incentivos Fiscais à I&D Empresarial, 이하 SIFIDE)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관련 사업이 SIFIDE 기금 또는 타국의 R&D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되거나 자금이 조달된 경우, SIFIDE 기금 투자의 20%를 혁신 투자 공제에 적용할 수 있음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R&D 지출 요건을 전년도 매출액의 7.5%에서 5%로 인하함
 - SIFIDE 기금의 R&D 기업 투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대상기업이 R&D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2025년부터 회사 자본금 및 의결권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공제액을 100만유로³⁰⁾에서 200만유로로 인상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선임연구원>



스웨덴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대한 세금 감면 제안]

- 스웨덴 재무부는 2024년 6월 27일,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대한 주류세 인하를 제안하는 공개 협의용 법안 초안을 발표함³¹⁾
 - (적용 대상 양조장) 감면 혜택은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면허 없이 생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로 제한됨
 - 협력하는 소규모 양조장은 총생산량이 300만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일 법인으로 간주됨
 - (적용 대상 주류) 연간 생산량이 최대 300만 리터인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적용됨
 - (감면 세율) 제조업체는 생산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되며, 가장 작은 그룹은 50%의 세금을 감면받고, 각 그룹별로 10%p씩 감면 세율이 낮게 적용됨

28)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600만원임

29)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억 8,490만원임

30)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9,245만원임

31) IBFD, "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Tax on Beer Produced by Microbreweries," 2024. 6.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7_se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표 3> 연간 맥주 생산량에 따른 세금 감면율

(단위: %)

연간 생산량	세금 감면율
~ 500,000 리터 이하	50
500,000 리터 초과 750,000 리터 이하	40
750,000 리터 초과 1,000,000 리터 이하	30
1,000,000 리터 초과 2,000,000 리터 이하	20
2,000,000 리터 초과 3,000,000 리터 이하	10
3,000,000 리터 초과	0

출처: 스웨덴 재무부 배포자료, "Sänkt alkoholskatt för öl från oberoende småbryggerier," 2024. 6. 27.,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24/06/sankt-alkoholskatt-for-ol-fran-oberoende-smabryggerier/>, 검색일자: 2024. 7. 29.

-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협의에 대한 회신은 2024년 8월 30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노르웨이

[필라 2에 대한 협의 개시]

■ 노르웨이 재무부는 2024년 6월 19일, 2025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포함하는 노르웨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Suppleringskatt)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한 공개 협의 법안 초안을 발표함^{32), 33)}

- 제안된 과세 모델은 15%의 세율을 달성하기 위해 공제를 제한하는 대신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며, 소득산입규칙(IIR)과 적격내국최저한세(QDMTT)의 도입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UTPR)을 포함함

- 노르웨이 기업 간 세액 배분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간 배분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발표함

- 즉, 정규직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의 가액에 따라 세액을 배분함

- 모델규정 제9.3절과 관련해서는 해당 관할국이 노르웨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 선택규정을 포함하지만, 선택규정(모델규정 제9.3.5조)에 대한 예외는 포함하지 않음

- 모델규정 제9.3절은 국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UTPR 적용 제외에 대해 다름

- 또한, 재무부는 노르웨이 국외에서 납부한 최저한세의 처리에 관한 일반세법 개정도 제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칙에 국외 최저한세액은 노르웨이 법인소득세에 대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제안됨

- 제안된 변경 사항은 또한 기업 소득을 결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간주할 수

32) IBFD, "Norway Opens Consultation on Undertaxed Profits Rule (Pillar Two)," 2024. 6.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9_no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33) 노르웨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법률 No. 2024-01-12-1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 규칙에 새로운 예외를 도입하여 국외 최저한세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의견은 2024년 9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TPR은 2025년 1월 1일부터이며, 일반세법의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소급 적용)부터 발효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덴마크

[스트리밍 서비스에 문화 기여금 도입]

■ 덴마크 의회는 2024년 5월 30일,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덴마크 시청각 콘텐츠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 기여금(kulturbidrag)’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킴³⁴⁾

- (납세의무자) 문화 기여금은 덴마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덴마크 및 EU 기반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며, 연간 매출이 1,500만 덴마크크로네³⁵⁾ 미만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인 업체는 기여금 납부 의무가 면제됨
-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해당 미술품 등에는 핀란드의 마진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적용세율) 적용세율은 2%이나,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됨

- 덴마크 소재가 75% 이상 포함된 제작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덴마크 콘텐츠에 수익의 5% 미만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3%의 추가 세율이 적용됨
- (조세행정 주무기관) 징수 기관은 덴마크 문화청임
- (기타) 덴마크 정부는 이 문화 기여금이 OECD 필라 2 협약과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관한 ‘정지’ 및 ‘롤백’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문화 기여금을 적절히 조정하는 데에도 합의함
- (적용 기간) 이 법안은 이전에 채택된 2023년 12월 19일의 법안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유럽위원회에 통보한 후 정지기간에 관한 절차적 및 행정적 오류로 인해 철회된 바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일본

[이노베이션 박스 관련 규정 공포]

-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21일, 지적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 우대 제도인 이노베이션 박스에 대한 정부 규정을 관보에 공포함^{36), 37)}

34) IBFD, “Parliament Introduces Cultural Contribution on Streaming Services Retroactively from 2024,” 2024. 7.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01_dk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35)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억 1,035만원임

36) 国立印刷局, 「官報」号外 第149号, p. 43, 2024. 6. 21.(令和 06. 06. 21.)

37) IBFD, “Japan - Japan Enacts New Regulations on Innovation Box Regime,” 2024. 6.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6-26_jp_1, 검색일자: 2024. 7. 12.

- 본 제도의 도입은 2024년 3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에 근거함
- 특수 관계자 대상이 아닌 적격 지적 재산의 라이선싱(licensing) 또는 국내 판매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 소득 중 국내 자체 개발 부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이때 국내 자체 개발 부분은 적격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비에서 국내 또는 자체 개발 성격이 없는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이에 본 규정은 적격 지식재산 소득에서 국내 자체 개발 부분을 식별하기 위한 세부 계산법을 설명함
- 이노베이션 박스의 최대 공제 한도는 총소득의 30%이며, 본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총소득의 의미 역시 본 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이노베이션 박스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 가능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선임연구원>



중국

[NEEQ³⁸⁾ 거래 주식 배당금, 양도소득 감면 혜택 연장 발표]

- 중국 재정부(財政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장외 주식 거래소인 NEEQ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 배당금,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연장을 2024년 6월 28일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NEEQ)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으로부터 개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액 감면을 유지할 것을 발표함
 -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나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나 양도 소득의 50%만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1개월 미만 보유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나 양도 소득의 20% 세금 부과
 - 투자 펀드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익에도 적용될 예정임³⁹⁾

<자료수집 및 조사: 정호림 세무사>



싱가포르

[2025년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세부 사항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필라 2 이행을 위한 2025년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주요 예정 사항을 발표함⁴⁰⁾
 -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6월 10일, 최종 모회

38) NEEQ(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신삼판(新三板)으로 알려진 이 거래소는 중국의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이며 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됨

39) 국가세무총국,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32671/content.html>, 검색일자: 2024. 7. 10.

40) IBFD, "Singapore - Ministry of Finance Consultation: Details of New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Bill 2024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Regulations 2025," 2024. 6.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4_sg_1.html, 검색일자: 2024. 7. 4.

사의 통지의무, 관련 소득세법 개정, 다국적 기업의 세금 책임 강화, 외국에서 부과된 특정 세금을 공제 및 외국 세액 공제에서 제외 하도록 명시한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주요 개정 사항을 담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함

- 최종 모회사(UPE, The Ultimate Parent Entity) 통지의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국세청에 등록, 통지 및 필요 정보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다국적 기업 추가세(MTT, 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국내 추가세(DTT, Domestic Top-up Tax) 과세액의 10% 추가 부과 예정임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GIR, GloBE Information Return) 제출 의무는 지정된 지역 법인이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불이행 또는 거짓 정보 제공 시 범죄로 간주함
- 다국적 기업 추가 세금(MTT, 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국내 추가 세금(DTT, Domestic Top-up Tax) 관련 금액은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 예정
 -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발표한 날짜에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

작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OECD

[필라1 Amount B 문서 및 필라2 행정지침·GloBE 규칙 Q&A 발간]

-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4년 6월 17일, 필라1 Amount B 관련 문서를 발표함⁴¹⁾
 - 필라1 Amount B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는 관할국과 관련한 정의규정을 다루고 있음
 - Amount B 지침의 제5.2절의 적격 관할국의 정의(영업비용 교차 검토) 및 제5.3절의 적격 관할국의 정의(데이터 가용성 메커니즘)⁴²⁾
 - Amount B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의 정치적 약속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대상 관할국의 정의⁴³⁾
-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4년 6월 17일, 필라2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4번째로 발간하고, 질의응답 문서를 통해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필라2 행정지침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 대

41) EY, “OECD/G20 Inclusive Framework releases documents on Pillar One Amount B and Pillar Two,” 2024. 6. 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g20-inclusive-framework-releases-documents-on-pillar-one-am, 검색일자: 2024. 7. 1.

42) OECD, “Statement on the definitions of qualifying jurisdic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2 and section 5.3 of the 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 <https://search.oecd.org/tax/beps/statement-qualifying-jurisdiction-definitions-section-5-2-section-5-3-simplified-streamlined-approach.pdf>, 검색일자: 2024. 7. 1.

43) OECD, “Statement on the definition of covered jurisdiction for the Inclusive Framework political commitment on Amount B,” <https://search.oecd.org/tax/beps/statement-covered-jurisdiction-definition-inclusive-framework-commitment-amount-b.pdf>, 검색일자: 2024. 7. 1.

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향후 주석서 개정본에 통합될 예정이다⁴⁴⁾

- 주요 내용은 이연법인세부채 재계산 규칙에 대한 설명, GloBE 규칙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국가 간 배분, 도관기업을 포함한 기업구조의 이익 및 조세의 배분, 자산유동화 기구의 취급임

● 필라2 GloBE 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문서는 이행 관할국의 소득산업규칙, 소득산업보완 규칙,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의 적격 지위 및 적격 소재국추가세액 세이프하버의 적격을 판단하기 위한 상호검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⁴⁵⁾

- 전반적인 상호검토 결과 법률이 자격을 갖 추지 못했거나 합의된 기간 내에 법률이 발 의되지 않아 전환기(transitional) 자격을 상실 하더라도 자격 상실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음

- 포괄적 이행체계는 적용 개시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전환기 자격이 있는 법률을 입법 한 관할국의 목록을 OECD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행 관할국 또한 이 목록에 포함된 다른 관할국의 전환기 적격을 인정 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4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June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june-2024.pdf>, 검색일자: 2024. 7. 1.

45) OECD, "Qualified Status under the Global Minimum Tax -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qualified-status-under-the-global-minimum-tax-questions-and-answers.pdf>, 검색 일자: 2024. 7. 1.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의 일관된 국가별 권고사항에 동의(2024. 7. 16.)¹⁾

※ 국가별 권고사항은 EU 회원국의 경제, 고용, 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조정하는 European Semester의 단계적 절차의 일부. 올해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정사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가을까지 제출할 중기 재정구조 계획에 국가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재정조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재정준칙 등 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올해 가을까지 순지출 경로와 개혁 및 투자를 포함한 중기 재정구조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중기 재정구조 계획의 재정 조정 기간은 4년으로 각 회원국의 개혁 및 투자 이행 약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국가별 공통적 권고사항으로는 중기 재정구조 계획의 적시 제출, 순지출 증가 제한*등 제시²⁾

* 개정된 안정성협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5년 순지출 증가를 일률적으로 제한. 특히 회원국들의 중기 일반정부 부채가 적정

수준의 하향세를 나타내도록 하고, 일반정부 적자를 협약 기준값인 GDP 대비 3%로 감소하도록 순지출 경로를 계획하도록 함

- (공통 권고사항) 회복·복구 계획³⁾내 REPowerEU⁴⁾의 빠른 이행을 통한 개혁과 투자 완료(2026년 8월까지), 결속 프로그램의 실행 가속화,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이용하여 경쟁력 향상
- (프랑스) 복잡한 과세 제도 개선, 정량적 예산 절감 목표 설정, 기술 부족 문제 해결(특히 녹색 전환 관련), 저숙련자 교육 참여 촉진, 행정부담 감소로 사업 환경 개선 등
- (독일) 연금 제도 개혁으로 재정 여력 확대, 숙련 노동자 부족 해결, 교육 성과 개선, 공공 행정 디지털화 확대,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
- (네덜란드) 신규 주택 건설 촉진,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 요양 시스템을 비용 효율적으로 개편, 구조적 노동·기술 부족 문제 해결, 전기 송전 및 배전망 투자 촉진, 재생에너지 설치 가속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 강화 등
- (스웨덴)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불균형 감

1)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 2024: Council agrees on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2024. 7.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6/european-semester-2024-council-agrees-on-country-specific-recommendations/>, 검색일자: 2024. 7. 18.

2) 국가별 권고사항은 EU 27개 회원국에 대해서 개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하 본 재정동향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문을 참고

3)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은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고자 함

4) 2022년 5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급 다각화, 청정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가격안정화를 이루고자 함(EU 집행위원회, REPowerEU,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repowereu-affordable-secure-and-sustainable-energy-europe_en, 검색일자: 2024. 7. 30.)

소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축소, 재산세 인상, 주택건설 촉진,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등 교육 성과 개선,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 (향후 일정) 2024년 10월 이사회는 국가별 권고사항을 논의한 후 European Semester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별 권고사항을 공식 채택할 예정

■ EU 이사회(유로그룹⁵⁾), 2025년 유로지역 재정기준에 대한 성명 채택(2024. 7. 15.)⁶⁾

- (경제) 2024년과 2025년 유로지역 경제 활동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조건이 유지되고 있음
 - 올해 5월 EU 집행위 봄 전망에 따르면 물가 상승 추가 둔화와 탄력적인 노동 시장으로 소비가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용조건 개선과 회복·복구 기금 지원으로 투자 증가 예상
- (재정) 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준은 에너지 지원 조치 종료 등으로 긴축으로 전환 예정
 - 2020~2022년 동안 경제 충격 완화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완화정책 이후 2023년

중립 기조로 전환, 2024년에는 에너지 지원 조치 종료로 재정 긴축 예상

- 2025년 유로지역 GDP 대비 재정적자는 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공 부채는 2023~2025년 동안 GDP 대비 약 90% 수준으로 전망
- (주요 의견) 유로지역은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앞으로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함
 - 이와 동시에 재정건전화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 제고, 경쟁력이 있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해 현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함
 - 회원국들은 2025년 예산부터 국가별 재정정책에 개정된 재정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2025년 유로지역에서 전반적 재정 긴축정책 운용이 예상됨

■ EU 통계청, 2024년 1분기 재정통계 발표(2024. 7. 22.)⁷⁾

- 2024년 1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유로지역⁸⁾에서 GDP 대비 3.2%로 전분기 대

5) EU 회원국 중 유로지역(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 국가들의 비공식적 재무장관 회의

6) EU 집행위, "Eurogroup statement on the fiscal stance for the euro area in 2025," 2024. 7.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5/eurogroup-statement-on-the-fiscal-stance-for-the-euro-area-in-2025/>, 검색일자: 2024. 7. 17.

7)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0% in the EU,"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bp#:~:text=quarter%20of%202023-,Overview,the%20fourth%20quarter%20of%202023>, 검색일자: 2024. 7. 24.;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up to 88.7% of GDP in euro area,"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ap>, 검색일자: 2024. 7. 24.

8)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비 0.8%p 감소하였고, EU 27개국은 3%로 전분기 대비 0.9%p 감소

- (유로지역) 2024년 1분기 정부 총수입은 전분기 대비 20억유로 감소하고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은 전분기 46.5%에서 46.7%로 0.2%p 감소

- 유로지역 정부 총지출은 2023년 4분기에 비해 2024년 1분기에 약 310억유로 감소하고 명목 GDP가 증가로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율은 전분기 50.0%에서 50.7%로 0.7%p 증가

- (EU) 전분기 대비 총수입이 약 90억유로 증가하고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은 전분기 46.0%에서 46.2%로 0.2%p 증가

- 전분기 대비 정부 총지출이 약 290억유로 감소하고, 명목 GDP가 증가하여 GDP 대

비 정부 총지출 비율은 전분기 49.5%에서 50.1%로 0.6%p 증가

- 2024년 1분기 말 유로지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88.7%로 전분기 88.2%에 비해 0.5%p 증가하였고, EU는 GDP 대비 82.0%로 전분기 81.5%에 비해 0.5%p 증가

- 전년 동기와 비교 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유로지역에서 1.4%p 감소하였고, EU에서는 1%p 감소

- 2024년 1분기 말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 프랑스(110.8%), 스페인(108.9%), 벨기에(108.2%), 포르투갈(100.4%) 순으로 높음

- 불가리아(22.6%), 에스토니아(23.6%), 룩셈부르크(27.2%) 순으로 부채 비율이 낮음

◀표 1>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의 2024년 1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Q1	2023 Q4	2024 Q1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3.3	-4.0	-3.2
	정부수입	46.3	46.7	46.2
	정부지출	49.6	50.7	49.4
	정부부채	90.1	88.2	88.7
EU 27개국	재정수지	-3.1	-3.9	-3.0
	정부수입	45.6	46.2	45.9
	정부지출	48.7	50.1	48.9
	정부부채	83.0	81.5	82.0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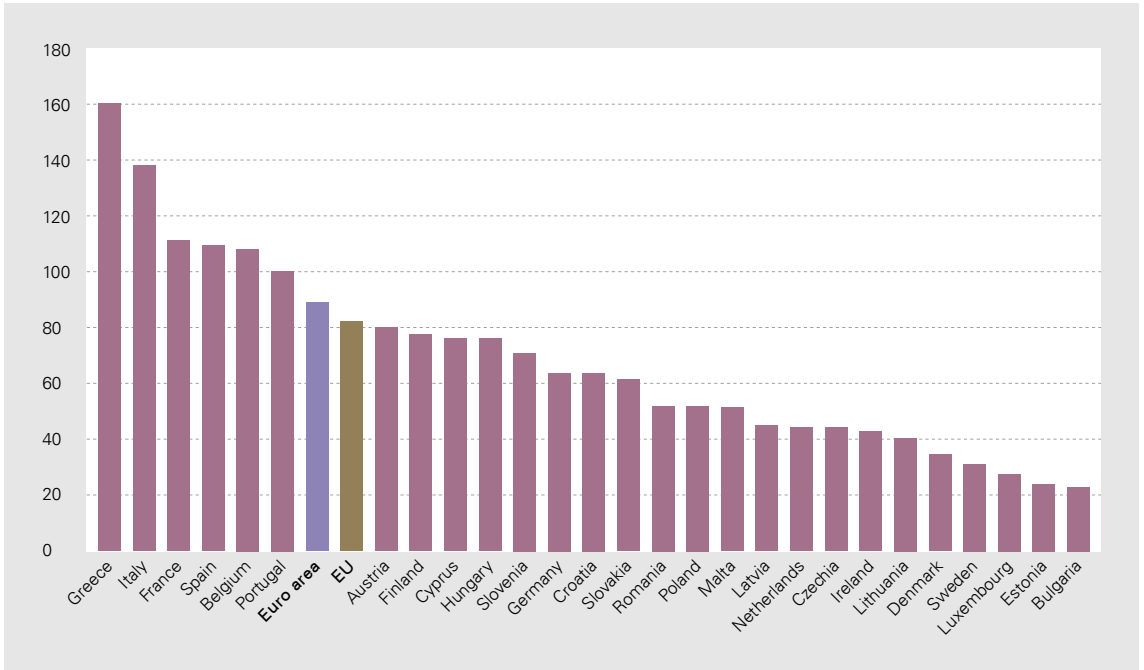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0% in the EU,"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bp#:~:text=quarter%20of%202023-,Overview,the%20fourth%20quarter%20of%202023>, 검색일자: 2024. 7. 24.

_____, "Government debt up to 88.7% of GDP in euro area,"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ap>, 검색일자: 2024. 7. 24.

[그림 1] 2024년 1분기 말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up to 88.7% of GDP in euro area,"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ap>, 검색일자: 2024. 7. 24.



IMF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업데이트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발표(2024. 7. 16.)⁹⁾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2%, 2025년에 3.3%로 지난 4월 WEO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4월 WEO 전망 대비 2024년 1분기에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

면, 많은 국가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가간 생산량 격차가 다소 줄어들

- 미국은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 둔화와 순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2024년 2.6%, 2025년에 1.9%의 경제성장을 전망
- 일본은 1분기에 주요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시적 공급 중단과 민간 투자 부진이 반영되어 2024년에 0.7%, 2025년에는 1.0%로 하향 조정됨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2024. 7. 1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07/16/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4?cid=ca-com-homepage>, 검색일자: 2024. 7. 17.

- 반면 유럽에서는 서비스 부문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2024년에 0.9%, 2025년에 1.5%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한편, 독일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약세로 경제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1분기에 민간소비 반등과 수출 호조로 인해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2024년 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4.5%로 둔화되었다가 중기적으로 노령화와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해 2029년까지 3.3%로 감소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24~2025년에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이 수정되었으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선진국보다 천천히 감소할 전망
- 일부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자율 격차(interest rate differentials)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하락으로 촉발된 외부 위험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연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위험) 세계 전망에 대한 상하방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과 무역 또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 일부 단기 위험이 두드러짐
 - 지속적으로 높은 이자율은 차입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낮은 잠재성장률과 함께 재정 개선이 실질 이자율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금융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올해 선거 결과로 경제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선(baseline)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
 - 반면 다자주의를 장려하고 거시구조 개혁을 빠르게 이행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및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정책 권고) 정책입안자들은 ① 물가 안정 달성과 ② 완충 장치(buffer)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제고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 정책조합의 순서를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있는 국가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긴축의 여지를 남겨둬야 함
 -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데이터가 뒷받침될 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시에 재정건전화가 이행될 여지가 제공될 것임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 정책 차이로 인해 통화 및 자본흐름 변동성 위험 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 선진국은 여성과 이민자 통합을 통해 노동공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구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표 2>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단위: %)

구분	추정		전망		2024년 4월 전망 대비 ¹⁾		
	2022	2023	2024	2025	2024	2025	
세계 경제	3.5	3.3	3.2	3.3	0.0	0.1	
선진국	2.6	1.7	1.7	1.8	0.0	0.0	
미국	1.9	2.5	2.6	1.9	-0.1	0.0	
유로지역	3.4	0.5	0.9	1.5	0.1	0.0	
독일	1.8	-0.2	0.2	1.3	0.0	0.0	
프랑스	2.6	1.1	0.9	1.3	0.2	-0.1	
이탈리아	4.0	0.9	0.7	0.9	0.0	0.2	
스페인	5.8	2.5	2.4	2.1	0.5	0.0	
일본	1.0	1.9	0.7	1.0	-0.2	0.0	
영국	4.3	0.1	0.7	1.5	0.2	0.0	
캐나다	3.8	1.2	1.3	2.4	0.1	0.1	
그 외 선진국 ²⁾	2.7	1.8	2.0	2.2	0.0	-0.2	
한국	2.6	1.4	2.5	2.2	0.2	-0.1	
신흥개도국	4.1	4.4	4.3	4.3	0.1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4.4	5.7	5.4	5.1	0.2	0.2	
중국	3.0	5.2	5.0	4.5	0.4	0.4	
인도 ³⁾	7.0	8.2	7.0	6.5	0.2	0.0	
유럽 신흥개도국	1.2	3.2	3.2	2.6	0.1	-0.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4.2	2.3	1.9	2.7	-0.1	0.2	
중동 및 중앙 아시아	5.4	2.0	2.4	4.0	-0.4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0	3.4	3.7	4.1	-0.1	0.1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⁴⁾	5.6	0.8	3.1	3.4	0.1	0.1	
선진국	6.2	0.1	2.5	2.8	0.3	-0.1	
신흥개도국	4.5	2.0	4.2	4.5	-0.1	0.5	
원자재 가격(달러)	오일 ⁵⁾	39.2	-16.4	0.8	-6.0	3.3	0.3
	비연료	7.9	-5.7	5.0	1.6	4.9	2.0
세계 소비자물가 ⁶⁾	8.7	6.7	5.9	4.4	0.0	-0.1	
선진국 ⁷⁾	7.3	4.6	2.7	2.1	0.1	0.1	
신흥개도국 ⁸⁾	9.9	8.3	8.2	6.0	-0.1	-0.2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4. 4. 22~2024. 5. 20.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국가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1) 현재 및 2024년 4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4년 4월 WEO 전망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는 2022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을 기준으로 2024년 7.3%, 2025년 6.5%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4. 5. 20. 기준) 기준 배럴당 미국달러 평균 유가는 2024년 \$81.26, 2025년 \$76.38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존 2024년 2.4%, 2025년 2.1%, 일본 2024년 2.4%, 2025년 2.0%, 미국 2024년 3.1%, 2025년 2.0%

출처: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4, July, Table 1, p. 5 (한국수치는 Annex 참고)

- 국내 지향적 정책의 오용은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므로, 무역 왜곡 조치 사용을 줄이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들의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감소로 인해 증가함

● 넷제로 전환은 노동시장을 재편할 것이며, 일자리의 1/4 이상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 현재 OECD 노동력의 약 20%가 넷제로 전환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녹색일자리(green-driven occupations)에 고용되어 있는 한편, 약 7%는 온실가스 집약적(GHG) 부문에 고용되어 있음

- 업무와 업무방식이 친환경화되고, 기후변화가 주로 기온 상승과 빈번한 기상이변을 통해 노동 수요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정책권고) 정부는 넷제로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실직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 근로자를 재교육해야 하며, 넷제로 전환기간 동안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ies)을 개발할 필요

- 향후 넷제로 전환으로 인해 온실가스 집약산업의 근로자들은 실직 후 소득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소득을 지원하고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손실을 완화하고 넷제로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OECD

■ OECD, 『2024년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24: The Net-Zero Transition and the Labour Market)』 발표(2024. 7. 9.)¹⁰⁾

● 2024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최신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패키지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평가함

●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역사적으로 높은 고용 수준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여 노동시장의 회복력(resilient)이 입증됨

- OECD 전체 고용(2024년 5월 기준)은 2000년 이후 약 25% 증가한 6억 6,200만 명이며 2024~2025년에 연간 약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OECD 전체 실업률(2024년 5월 기준)은 4.9%를 기록했으며, 2024~2025년에는 고용 증가가 둔화되면서 2025년 4분기에 약 5%로 소폭 상승 전망

10)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4*, 2024. 7. 9.,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mployment-outlook-2024_ac8b3538-en/full-report.html, 검색일자: 2024. 7. 11.

- 온실가스 집약적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부재하면 넷제로 전환이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음

■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2024. 7. 11.)^{11), 12)}

- (경제전망) 한국 경제는 일시적 성장 약화(soft patch)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의 호황이 반영되어 2024년에 2.6%, 2025년에 2.2%의 경제성장률 전망
- 높은 금리와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로 인해 부진한 민간소비를 강한 고용시장 및 팬데믹 기간의 초과저축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와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기대(expectations)는 안착(anchor)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최고치(6.3%)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목표 수준(2%)에 근접하고 있음
- 정책금리는 2023년 초부터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동안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 한국 정부는 팬데믹 동안 수요를 지원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재정정책 이후 재정건전화에 착수했으며, 제안된 재정준칙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낮추고 재정 및 채무 관리체계의 개선으로 2023년의 세수 부족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위험요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표 3> 한국 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GDP 성장률	2.7	1.4	2.6	2.2
민간소비	4.2	1.8	1.4	2.4
총고정자본형성	-0.2	1.4	1.0	2.1
수출	3.9	3.6	6.9	2.4
수입	4.2	3.5	1.2	2.4
실업률	2.9	2.7	2.9	3.0
소비자물가지수	5.1	3.6	2.5	2.0
경상수지(GDP 대비)	1.3	1.9	4.5	4.7
재정수지(GDP 대비)	-1.7	-0.8	-0.9	-0.3
일반정부 채무(GDP 대비)	50.5	50.9	52.4	53.3

출처: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Table 2.1, 2024. 7. 11.

11)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2024. 7. 1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4_c243e16a-en.html, 검색일자: 2024. 7. 12.

1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4. 7. 1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70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4. 7. 1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간의 무역 긴장이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적 타격은 제한적이며, 긴축된 금융 여건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맞물리면서 건설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남

- (정책권고) 고령화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 기후 목표 달성,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권고함



미국

[예산·결산 등]

- 관리예산처(OMB),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수정 전망(Mid-Session Review, MSR) 발표 (2024. 7. 19.)¹³⁾

※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법전(US Code, section 1106 of Title 31)에 근거하여 본 예산안 제출 이후 변화된 경제·입법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수정 전망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 (경제전망) 올해(2024년) 4분기(전년도 4분기 대비) 실질성장률은 본 예산안 전망(1.3%) 대비 0.6%p 상승한 1.9%이며 내년(2025년)에는 2.1%로 소폭 상승 전망
 - (물가) 올해(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은 본 예산안 전망(2.5%) 대비 0.6%p 상승한 3.1%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2.3% 전망
 - (실업률) 올해(2024년) 실업률은 본 예산안 전망(4.0%) 대비 0.2%p 하락한 3.8%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으로 3.8%를 유지할 전망
 - (금리) 2023년에 5.1%를 기록한 금리(단기 채권¹⁴⁾ 기준)는 이후 올해(2024년) 본 예산안 전망(5.1%)과 유사한 5.2%로 소폭 상승 후, 내년(2025년)에 4.3%까지 하락하며, 장

<표 4>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4
	실적	전망					
실질성장률 ¹⁾	3.1	1.9	2.1	2.0	2.0	...	2.2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 ²⁾	3.2	3.1	2.3	2.3	2.3	...	2.3
실업률 ³⁾	3.6	3.8	3.8	3.8	3.8	...	3.8

주: 1. 경제 지표 수치는 2024년 5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전망치

1)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증가율, Chained(2012) Dollars

2)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증가율, 계절조정

3) 연평균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2024. 7. 19., Table 2, p. 6

13) OMB, "Mid-Session Review," 2024. 7. 19.,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7/msr_fy2025.pdf, 검색일자: 2024. 7. 24.

14) 91-Day Treasury Bills

기적으로는 2.8% 전망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1조 7,810억달러) 대비 5.4% 증가한 1조 8,78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0.2%p 상승한 6.3%로 전망
- (수입) 2025회계연도 총수입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5조 4,850억달러) 대비 1.4%

증가한 5조 5,620억달러로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수입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0.7%p 상승한 18.7% 전망
- 2025회계연도 수입 변화는 경제적 가정 조정¹⁵⁾으로 인한 조정(+390억달러) 및 기술적 수치 수정(technical revisions)으로 인한 조정(+290억달러), 기타¹⁶⁾(+90억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

<표 5> 예산안 전망 (대통령 예산안(3월) VS MSR(7월) 수정 전망)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3	2034
예산총량												
수입	3월	3,421	4,047	4,897	4,441	5,082	5,485	5,873	6,186	...	8,258	8,639
	7월					5,001	5,562	6,011	6,332	...	8,321	8,733
지출	3월	6,550	6,822	6,273	6,135	6,941	7,266	7,419	7,697	...	10,060	10,316
	7월					6,875	7,439	7,613	7,867	...	10,322	10,638
재정적자	3월	3,129	2,775	1,376	1,694	1,859	1,781	1,547	1,510	...	1,801	1,677
	7월					1,874	1,878	1,601	1,535	...	2,001	1,905
연방채무 ¹⁾	3월	21,017	22,284	24,252	26,236	28,156	29,984	31,639	33,250	...	43,339	45,056
	7월					28,201	30,102	31,798	33,446	...	44,327	46,272
예산총량												
수입	3월	16.3	18.1	19.6	16.5	18.0	18.7	19.2	19.4	...	20.2	20.3
	7월					17.6	18.7	19.4	19.6	...	20.1	20.2
지출	3월	31.2	30.5	25.1	22.7	24.6	24.8	24.3	24.2	...	24.6	24.2
	7월					24.2	25.0	24.5	24.4	...	24.9	24.6
재정적자	3월	14.9	12.4	5.5	6.3	6.6	6.1	5.1	4.7	...	4.4	3.9
	7월					6.6	6.3	5.2	4.8	...	4.8	4.4
연방채무 ¹⁾	3월	100.1	99.6	96.9	97.3	99.6	102.2	103.6	104.5	...	106.0	105.6
	7월					99.1	101.2	102.5	103.6	...	106.9	106.9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2024. 7. 19., Table S-1., _____, "Fiscal Year 202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4. 3., Table S-1, p. 137

15) Revised economic assumptions

16) 신규 입법 등으로 인한 변화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지출) 2025회계연도 총지출 전망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7조 2,660억달러) 대비 2.4% 증가한 7조 4,39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지출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0.4%p 상승한 25% 전망
 - 2025회계연도 지출 변화는 신규 입법 및 지출 재추정(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재향군인 소득보전 등)에 따른 수치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상향 조정
- (채무) 2025회계연도 연방채무(내부거래 제외)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29조 9,840억달러) 대비 0.4% 증가한 30조 1,02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채무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1.0%p 하락한 101.2%로 전망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4. 7. 17.)^{17), 18)}
 - (경제활동) 전반적으로 근소(slight) 내지 완만(modest)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유지(flat) 및 감소를 보고
 - 2023년 연말 및 2024년 연초까지 경제성장 둔화(slowed)가 보고되었으나, 이후 경제활동은 성장세로 전환 및 지속
 - (노동시장) 고용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임금은 완만 내지 보통(moderate) 속도로 증가
 - 고용의 경우 완만한 상승부터 타이트(tight) 함까지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던 연초에

<표 6> 연준 「베이지북」 2024년 연초 대비 상반기 말 자구 변화

대상 기간	2023. 11. ~ 2024. 1. (2024년 1월 발표)	2024. 5. ~ 2024. 7. (2024년 7월 발표)
경제활동	지난 보고기간 (둔화됨)에서 유지	근소 내지 완만한 성장
제조업	감소	혼조세
소비지출	기대치 충족 혹은 초과	보합 및 소폭 증가
부동산	고금리 제약적	수요 증가하나 고금리 제약적
고용	혼조세를 보이거나 노동시장 냉각 징후 존재	전반적인 소폭 증가
임금	근소하거나 완만 내지 보통 정도의 상승	완만 내지 보통 정도의 상승
물가	근소하거나 완만 내지 보통 정도의 상승	근소 혹은 완만하게 상승

주: 완만함(modest) 표현은 보통(moderate) 수준보다 더 낮은 강도를 의미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4년 1월, 7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4. 5. 21.~2024. 7. 8. 동안 수집된 정보에 기반,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18)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4. 7. 1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40717.pdf, 검색일자: 2024. 7. 23.

- 비해 전반적인 소폭 증가세로 통합됨
- (노동수요) 모든 지역에서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 지속적 어려움 보고
- (임금) 대부분 지역에서 임금은 완만 내지 보통 속도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구에서는 근로자 가용성 증가 및 경쟁 감소로 임금 상승률 둔화를 보임
- (물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에 그침
- 건조한 물가 상승폭이 일부 보고되었던 2023년 연말 대비 2024년 상반기 말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만한 혹은 소폭 상승에 그침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¹⁹⁾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²⁰⁾ 발표(2024. 7. 29.)²¹⁾

- 2025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방침 2024」²²⁾를 바탕으로 경제·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 각 부처는 이하 기준에 따라 개산 요구를 시행하며, 제출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함
 - (연금·의료 등 관련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에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4,1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증가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 (어린이·육아 정책) 「어린이 미래 전략」²³⁾에서 제시한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관련 정책은 동 전략을 바탕으로 요구
 - 관련 예산은 연금·의료 등 관련 경비, 의무적 경비, 기타 경비에 포함됨
 - (방위력경비계획 대상 경비) ‘일본 방위력의

19) 일본의 2025회계연도는 2025년 4월~2026년 3월

20)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하며,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의에서 사전에 개산 요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개산 요구를 하도록 함., 출처: 藤井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21)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4.7.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sy240729a.pdf, 검색일자: 2024. 7. 30.

2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3」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구조적인 변화 및 과제 극복을 위해, 30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욕 증가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 6월 16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6월, p. 27을 참조(<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67>, 검색일자: 2023. 8. 7.)

23) 「어린이 미래 전략」은 2023년 12월 각의 결정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모든 어린이·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공동육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동 전략에서는 향후 3년간(2024~2026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함. 출처: 일본 내각관방, 「こども未来戦略」, 2023. 12. 22.,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검색일자: 2024. 7. 30.

근본적인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²⁴⁾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는 「방위력정비계획」²⁵⁾을 바탕으로 소요 비용을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지방특례교부금 합계는 ‘경제·재정 신생 계획’²⁶⁾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2025년도 일본 참의원 선거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가감산
-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관련 경비)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재해 지역 부흥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기타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의 90% (요구 기초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주요 정책 추진 범위) 지속적·구조적 임금

인상 실현, 민관(官民)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 등의 실현,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주요 정책 추진 범위’를 설정

- 각 성 장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요구 기초 금액의 차액(〔그림 2]의 (A))의 3배’, ‘의무적 경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의 해당 차액(〔그림 2]의 (B))의 3배’의 합계 금액 범위 내에서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예산을 요구
- 정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각 경비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필요 사항에 대처하도록 하며 임금 및 조달가격 상승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 고물가 대책, 임금 상승 환경 정비 촉진 중요한 정책은 필요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 범위’ 등에 포함하

24)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란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 이에 관한 사무와 조약에 따른 외국군대 주둔 및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기초한 미국 정부 책부 수행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것으로 각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방위성 소관에 한정)에 계상되는 경비(방위성이 실시하는 정보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디지털청 설치법 경비를 포함)으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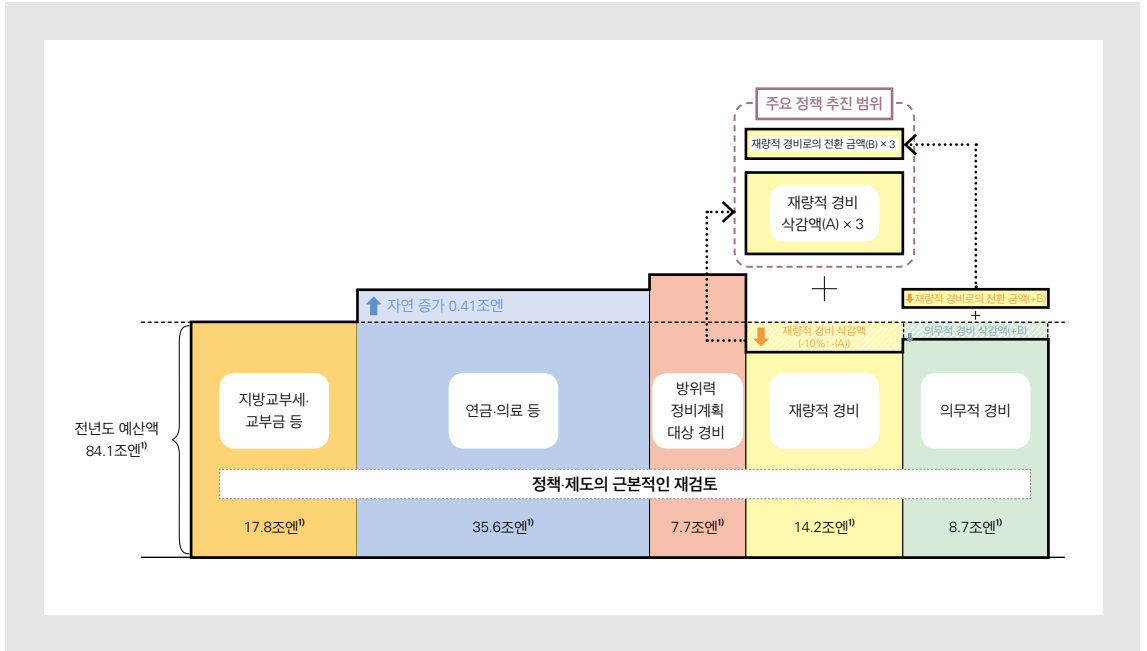
1.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오키나와현에 소재한 주둔군(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행동위원회가 정리하고 협의위원회가 승인한 오키나와현 주둔군의 시설 및 구역 정리, 통합 및 축소, 오키나와현 주둔군 운용방법 조정 방안과 관련된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협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주둔군 또는 자위대 부대나 기관의 편성, 배치 또는 운용 형태 변경에 관하여 정부가 강구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자위대법」 제 100조의 5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국민 등 수송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 취체에 필요한 경비

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069_20230623_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7.

25)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출처: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26)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4」에서 책정된 ‘경제·재정 신생 계획’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도까지 6년간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추진을 통해,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여 잠재성장률 인상과 사회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감축하여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을 재정건전화 목표로 설정(출처: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4 について」, 2024. 6. 21.;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4/2024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4. 7. 30.)

[그림 2]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



주: 1) 전년도 예산액은 원유가격 물가 급등 대책 및 임금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대응을 위해 증액한 일반예비비 5천억엔을 제외한 금액. 해당 경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은 85.6조엔, 의무적 경비는 10.2조엔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イメージ)」, 2024. 7.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sy240729c.pdf, 검색일자: 2024. 7. 30.

여 적절한 요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시행

영의 기본적 태도」라는 문서를 통해 정부 공식 전망을 발표함

- (2024년도 전망) 2024년도에는 일부 자동차의 생산·출하 정지 등에 따른 영향은 있으나,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기업 수익 호조, 정책 감세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여 소비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완만한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0.9%, 명목 GDP 성장률은 3%를 나타낼 전망

[기타]

■ 일본 내각부, 연중전망 발표(2024. 7. 19.)²⁷⁾

- (개요) 연중전망이란 연중 시점에서의 최신 경제 동향을 근거로 내각부에서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경제를 전망하여 발표하는 것이며, 예산안 발표 전에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

27) 일본 내각부, 「令和6 (2024) 年度 内閣府年央試算」,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4/r060719shisan.pdf>, 검색일자: 2023. 7. 22.

<표 7> 일본의 연중전망 주요 경제지표

(단위: %, %p)

구분	2023	2024		2025
	실적	12월 정부 경제 전망 ¹⁾	연중 전망	연중 전망
실질 GDP	1.0	1.3	0.9	1.2
민간최종소비지출	-0.6	1.2	0.5	1.0
민간주택	0.3	-0.3	-2.7	-0.4
민간기업설비	0.4	3.3	3.3	3.4
내수기여도	-0.5	1.4	0.9	1.1
외수기여도	1.4	-0.1	-0.0	0.1
실질 국민총소득	2.1	1.4	0.9	1.2
명목 GDP	5.0	3.0	3.0	2.8
완전실업률	2.6	2.5	2.5	2.4
고용자 수	0.7	0.2	0.2	0.2
생산자물가지수	2.3	1.6	2.1	2.0
소비자물가지수	3.0	2.5	2.8	2.2
GDP 디플레이터	4.0	1.7	2.2	1.6

주: 1. 기여도와 완전실업률 이외의 수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1) 12월 정부경제전망은 2023년 12월 내각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2024. 1. 26. 각의결정)에 나타난 수치.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일본」, 2024, p. 2, 표 1을 참조(<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Finance/kiPublish/CA2/Center/view.do?serialNo=527182>, 검색일자: 2024. 7. 22.)

출처: 일본 내각부, 「令和6(2024)年度 内閣府年央試算」, pp. 2~3. 재구성

- 2024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8%로 전망

- (2025년도 전망) 2025년도에는 물가 상승이 진정되고 소비회복, 설비투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1.2%, 명목 GDP 성장률 2.8%를 나타낼 전망

- 2025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2%로 전망



[예산·결산 등]

■ 연방내각, 2025 예산안 및 2024-2028 중기재정 계획안 승인(2024. 7. 17.)^{28), 29)}

- 연방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안을 승인

28) 독일 연방 재무부,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5 und Finanzplan bis 2028,” 보도자료, 2024. 7.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7/2024-07-17-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5.html>, 검색일자: 2024. 7. 18.

29) 독일 연방 정부, “Kabinett beschließt Haushaltsentwurf 2025 und Wachstumsinitiative,” 2024. 7. 1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haushalt-2025-wachstumsinitiative-2299130>, 검색일자: 2024. 7. 18.

- (재정전망) 2025년 연방예산 재정지출은 약 4,806억유로, 조세수입은 3,882억유로, 신규차입은 438억유로이며, 전년 대비 지출과 신규차입은 감소
 - 2025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3억유로(-1.7%), 신규차입은 6억 5천만유로(-12.9%) 감소
 - 반면, 2025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38억유로(3.7%) 증가
 - 연방정부는 수년간의 위기 관련 특별 지출 이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5년 부채 규정의 상한선을 계속 준수할 예정
- (재정기조 및 주요정책)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통한 안정성 유지와 미래를 대비한 기록적인 투자와 성장 이니셔티브(Wachstumsinitiative)로 중장기 잠재 성장 증대라는 목표를 추구
 - (투자) 2025년 투자 예산은 780억유로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금융 자산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독일 철도(Deutsche Bahn AG)에 59억유로를 배정
 - (국방 및 안보) NATO 협약에 따라 국방비에는 GDP의 2% 이상을 할당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
 - (성장 이니셔티브) 경쟁력 강화, 기업가적 역동성 강화, 더 나은 인센티브와 숙련된 근로자, 효율적인 금융정책 및 에너지 시장 등의 5개 분야 49개 조치를 통해 독일 경제에 더 많은 역동성을 제공
- (가족지원) 기본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회적 취약층 학생들을 위한 Start Chances 프로그램에 매년 10억유로를 할당하는 등 교육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
- (조세부담 경감)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과 세금 공제 및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2025년과 2026년 동안 총 230억유로의 세금을 감면할 예정이며, 전기차 지원, 전기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주택지원) 사회주택 장려를 위해 2028년까지 200억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기후 중립적인 주택 신규 건설을 위한 추가 지원 등 도시개발자금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
- (기후 및 에너지)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도구로 기후변화기금(KTF)을 유지하고,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및 해안보호 등에 추가자금을 제공
- (연구와 혁신) 연방정부는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강화를 위해 약 30억유로를 지원하고, 2025년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협약(Pact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통해 주요 과학 기관에 약 80억유로를 제공
-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과 함께 「2025년 예산동반법(Haushaltsbegleitgesetz

<표 8> 독일의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4 예산	2025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6	2027	2028
재정지출	4,889	4,806	4,746	4,862	4,978
전년 대비 변화율	6.9	-1.7	-1.2	2.4	2.4
재정수입	4,889	4,806	4,746	4,862	4,978
조세수입	3,744	3,882	3,999	4,139	4,277
신규차입	503	438	386	344	299
정보: 투자지출	708	780	775	755	714

주: 2024년 예산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에 대한 변화율이며, 2025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의 변화율임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5 und Finanzplan bis 2028," 보도자료, 2024. 7.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7/2024-07-17-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5.html>, 검색일자: 2024. 7. 18.

2025)」³⁰⁾이 제출되었으며, 정부예산안에서 고려된 법적 변경사항으로 구성

- 성장 이니셔티브 조치에 따른 법적 변경사항은 기술적 구현 작업으로 인해 「2025년 예산동반법」과 별도로 제출될 예정

- (향후 일정) 2025년 예산안은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되고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 후 11월경 「2025년 연방 예산법」으로 제정 및 공포

(Restrukturierungsfonds-Übertragungsgesetz)」

초안 통과(2024. 7. 24.)³¹⁾

- 연방내각은 구조조정기금(Restrukturierungsfonds)의 기존 자원을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Finanzmarktstabilisierungsfonds)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승인

※ 구조조정기금(RSF)은 금융 위기 시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독일에서 설립된 특별기금으로, 독일의 은행들로부터 부과된 은행세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며 문제 발생 시, 은행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

※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FMS)은 독일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기금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여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생 비용이나 손실을 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기타]

■ 독일 연방내각, 「구조조정기금 이체법

30) 세법개정,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 개정 등 연간예산법과 별개로 그 해의 재정 정책상 중요한 법률적 개정 사항들은 예산동반법이라는 법률 형태로 제정되며, 회계연도별 예산법과는 달리 예산동반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변경할 때까지 유효

31) 독일 연방재무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Gesetz zur Übertragung von Altmitteln aus der Bankenrestrukturierung," 2024. 7.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7/2024-07-24-altmittel-aus-bankenrestrukturierung.html>, 검색일자: 2024. 7. 30.

- 구조조정기금의 기존 자원을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으로 이전하여 누적된 적자를 부분적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 이전 시 적자는 216억유로에서 23억유로까지 감소
 - 이를 통해 독일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기금의 자금을 법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재배치
- 또한, 2024년부터는 은행세³²⁾에 대한 세제 혜택 금지 규정³³⁾이 폐지되어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24년부터 은행세는 운영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유럽 내 다른 금융기관들과 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공공채무 통계 발표 (2024. 7. 29.)³⁴⁾
 - 2023년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 규모는 2조 4,451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2년 말 대비 771억유로(3.3%) 증가해 연말 채무 통계로 측정된 국가채무 수준 중 최고치를 기록
 - 2023년도 49유로티켓(Deutschlandticket)의 도입으로 지방 대중교통 회사의 채무가 공공채무에 포함
 - 대중교통 회사의 채무 미포함 시 2023년 말 채무는 2조 4,354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673억유로(+2.8%) 증가
 - 2022년 말에 비해 2023년 말 채무 수준은 주 정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

<표 9> 독일의 2023년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채무 규모		변화율 (B-A)/A
	2022. 12. 31.(A)	2023. 12. 30.(B)	
합계	2,368,049	2,445,132	3.3
연방	1,620,357	1,696,263	4.7
주정부	606,863	594,196	-2.1
기초자치단체	140,807	154,633	9.8
사회보장	22	41	86.4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GENESI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sequenz=tabelleErgebnis&selectionname=71321-0005#breadcrumb>, 검색일자: 2024. 7. 30.

32) 은행세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특별 세금으로,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금융 위기 시 구제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어 법인세와는 별도로 구분됨

33) 금융기관들이 은행세를 납부할 때 그 금액을 세금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34) 독일 연방 통계청, “Pro-Kopf-Verschuldung steigt im Jahr 2023 auf 28 943 Euro,” 보도자료, 2024. 7. 29.,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7/PD24_288_713.html, 검색일자: 204. 7. 30.

보험 모두에서 증가

- 2023년 연방정부 채무는 1조 6,963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759억유로(4.7%)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과 연방군특별기금의 채무 증가에 기인
- 2023년 주정부 채무는 5,942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127억유로(2.1%) 감소
 - 1인당 채무는 브레멘(34,012유로), 함부르크(1만 7,095유로), 베를린(1만 6,602유로) 순으로 높음
-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2년 대비 138억유로(9.8%) 증가한 1,546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2022년 대비 86.4% 증가한 4,100만유로를 기록

로, 2022년 대비 0.7%p, 2023년 예산법 전망 대비 0.6%p 높게 나타남

-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됨
- 공공채무는 3조 1천억유로에 이르렀으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 7천억유로 이상 증가해 GDP 대비 110%에 달함
- 2023년 12월 채택된 「2023-2027 중기재정법(LPFP 2023-2027)」의 재정 회복 경로에서 벗어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4월 발표한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다년도 재정 목표를 제시함
 - 하지만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는 경제성장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며, 전례 없는 지출 절감과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세금 인상을 가정하고 있다고 평가됨
 - 경제성장이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이 전망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
- 현재 프랑스의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가됨
 -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반복되는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공공채무로 인해 더 큰 이자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재정 지출이 제한되고 정부의 투자 능력을 저해



프랑스

■ 프랑스 회계감사원, 『공공재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발표(2024. 7. 15.)^{35), 36)}

- 프랑스 공공재정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로, 2023년의 재정 현황과 2027년까지의 재정전망을 분석하며, 적자와 채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
- 2023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5.5%

35)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2024. 7. 15.,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a-situation-et-les-perspectives-des-finances-publiques-15>, 검색일자: 2024. 7. 23.

36)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Finances publiques : une situation “inquiétante” selon la Cour des comptes,” 2024. 7. 18.,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4888-finances-publiques-une-situation-inquietante-selon-la-cour-des-comptes>, 검색일자: 2024. 7. 23.

하며 새로운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확대됨

-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는 기후 변화 및 생태학적 전환에 대한 과제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음
 -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 및 생태학적 전환에 필요한 추가 투자가 재정목표 설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공공과 민간 간의 노력을 명확히 분담해야 함
-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공공채무를 감소 추세로 되돌리는 것이 필수적
 -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재정 개선 노력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함

■ 프랑스 재정감사국(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IGF), 『재정수입 분석 보고서』 발표 (2024. 7. 11.)^{37), 38)}

- 프랑스의 재정수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로, 연례적인 보고서는 아니며 재정수입의 전망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 등을 제시함
-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예산법 전망(2023. 12. 29.) 대비 0.6%p 높은 5.5%를

기록

- 재정수입이 예산법 대비 약 210억유로(기존 전망 대비 약 1.7%) 낮아 재정수지가 전망보다 악화됨
- 2023년 재정수입의 증가가 명목 GDP 성장보다 낮게 기록됨
 - 명목 GDP 성장률 대비 재정수입 증가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재정수입의 GDP 탄력성이 0.42로 장기 평균인 1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 재정감사국의 추정에 따르면 재정수입 전망 오차의 22%는 내부요인에서 기인하고 78%는 외부요인에서 기인함
 - 내부요인은 46억유로로 추산되며, 지나치게 유리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의 요인이 포함됨
 - 법인세의 경우 경제 부문별 분석이, 사회보장세의 경우 급여 총액에 대한 더욱 세심한 모니터링이 오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초과 수익 기여금의 경우 새로운 조치 예측의 어려움이 반영됨
 - 외부요인은 165억유로로 거시경제와 경제주체의 행동 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
- 재정수입 전망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 개발 필요
 - 재정수입의 GDP 탄력성 지표 예측 개선

37) 프랑스 재정감사국, *Les prévisions de recettes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2024. 7. 11., <https://www.igf.finances.gouv.fr/igf/accueil/nos-activites/rapports-de-missions/liste-de-tous-les-rapports-de-mi/les-previsions-de-recettes-des-p.html>, 검색일자: 2024. 7. 25.

38)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Recettes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 un écart de -21 milliards d’euros avec les prévisions,” 2024. 7. 23.,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4949-deficit-public-comment-ameliorer-les-previsions-du-budget-de-letat>, 검색일자: 2024. 7. 2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전망과 실적 간 오차 분석의 체계화
- 재정수입 전망 및 회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강화 필요

파운드(1.1%) 감소

- 2024-25회계연도 총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은 약 8,504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88억파운드(2.3%) 증가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³⁹⁾ 발표(2024. 7. 17.)⁴⁰⁾
 - 2024-25회계연도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약 1조 394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472억파운드(4.8%) 증가
 - 부처별 지출한도(DELT)⁴¹⁾는 약 5,009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⁴²⁾은 약 4,41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109억파운드(2.1%) 감소, 593억파운드(15.5%) 증가
 - 총비예산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⁴³⁾은 약 97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억

- 영국 재무부, 「예산 책임 및 감사법 2011」⁴⁴⁾ 개정을 통한 ‘fiscal lock’ 규정 도입 발표(2024. 7. 18.)⁴⁵⁾
 - (목적·배경)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구 금융을 보호하기 위함
 - 2022년 9월에 당시 보수당 정부는 대규모 감세조치를 포함한 ‘2022년 성장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금융시장 혼란(국채 금리 급등,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이 심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주요 정책들을 철회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정책(fiscally significant measure)’ 수립 시 경제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해 예산책임청(OBR)의 독립적인 평가가 수반되도록 하는 ‘fiscal lock’을 도입하고, 이를 동 법에 규정

39)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세출예산안

40) HM Treasury, “Main Supply Estimates 2024 to 25,” 2024. 7.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in-supply-estimates-2024-to-2025>, 검색일자: 2024. 7. 18.

41) Department Expenditure Limit: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42)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3)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44)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정부 재정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예산책임청의 영구화, 감사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1년 제정된 법으로, 예산 책임(Budget Responsibility)에 대한 부분과 감사(National Audit)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

45) OBR, “The Budget Responsibility Bill,” News, <https://obr.uk/the-budget-responsibility-bill/>, 검색일자: 2024. 7. 22., HM Treasury, “Draft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text on the fiscal lock,” Policy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aft-charter-for-budget-responsibility-text-on-the-fiscal-lock>, 검색일자: 2024. 7. 22., HM Treasury, “Government introduces new Fiscal Lock Law to deliver economic stability and protect family finances,” Press relea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troduces-new-fiscal-lock-law-to-deliver-economic-stability-and-protect-family-finances>, 검색일자: 2024. 7. 22., UK Parliament, “Budget Responsibility Bill,” Parliamentary Bills, <https://bills.parliament.uk/bills/3731>, 검색일자: 2024. 7. 22.

<표 10>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2-2023 회계연도 실적치	2023-2024 회계연도 잠정치	2024-2025 회계연도 계획
부처별 지출한도(DEL) (a)	449,697	511,847	500,906
자원 DEL	359,789	412,438	397,941
자본 DEL	89,907	99,408	102,966
연간 관리 지출(AME) (b)	212,745	382,215	441,522
자원 AME	182,822	300,360	342,450
자본 AME	29,923	81,855	99,073
총순예산 (a+b) (Total Net Budget)	662,442	894,062	942,428
총비예산 지출 (c) (Total Non-Budget Expenditure)	86,664	98,145	97,020
총지출 (a+b+c) (Total Resource and Capture in Estimates)	749,105	992,207	1,039,448
현금주의 조정 (d) (Resource to cash adjustment)	-41,922	-160,591	-189,001
총순현금소요액 (a+b+c+d) (Total Net Requirement)	707,184	831,616	850,447

출처: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4-25: Main Supply Estimates*, 2024. 7., Table 1, 2, 재구성

- ‘fiscal lock’은 ‘일시적(temporary)이고 비상적인(emergency) 상황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는 미적용
- ‘대규모 재정 정책’,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의 정의 등, 세부사항은 예산책임현장⁴⁶⁾에 명시
 - ‘대규모 재정 정책’은 GDP* 대비 1%(현재 기준, 약 300억파운드) 이상의 영구세⁴⁷⁾ 또는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정책을 의미

* 예산책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예측에서 해당연도의 명목 GDP를 의미

-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같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일시적이면서 비상적인 조치를 의미
-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거나 예산책임청에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산책임청은 재량적으로 ‘fiscal

46)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예산 책임 및 감사법 2011」의 ‘Part 1. 예산 책임’ 규정에 따라 재무부의 재정 목표(재정 준칙), 연간 예산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재무부의 목표, 예산책임청의 역할 등에 대한 것을 수록한 문서

47) Permanent tax: 영국의 조세는 영구세와 연간세(annual tax)로 구분되는데, 간접세는 대부분 영구세이며 세율이 매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 등은 연간세로, 경제 여건이나 조세정책에 따라 세율과 구간, 감면한도 등이 매년 바뀜(출처: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p. 27)

lock'을 작동할 수 있음

- (평가) 영국산업연맹(CBI)의 루이스 헬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안정성은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세 및 재정지출의 대규모 정책이 예산책임청의 독립적인 평가를 받도록 보장하면 기업과 투자자에게 공공재정의 안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호주

■ 호주 정부, 2024년 7월부터 변화하는 정책 소개 (2024. 7. 1.)^{48), 49)}

- (소득세 감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으로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 국민에 대한 생활비 지원
 -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 세율은 19%에서 16%로 인하, 최고 세율 45% 적용 기준선을 상향(18만 → 19만호주 달러) 조정하는 등 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3.75% 인상되어 최저시급이 23.23호주달러에서 24.1호주달러로 상향 조정

- 노인 요양보호사(aged-care workers) 임금은 15% 인상

- (에너지요금 지원)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대해 300호주달러, 중소기업은 325호주달러⁵⁰⁾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고통 완화에 도움
- (의약품 비용 동결 및 메디케어 확대) 정부는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본인부담금 및 PBS의 처방 최대 비용을 동결하고, 무료 메디케어 긴급 클리닉을 확대하여 필요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20주에서 22주로 확대 시행되며, 2025년 및 2026년에 2주씩 추가 연장될 예정

■ 호주 재무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발표(2024. 7. 4.)⁵¹⁾

- 호주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발표
 - 동 법안은 다국적 기업 조세 공정성 확보를 위해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자간 협약인 OECD/G20 필라2에 따른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것이며, Albanese 정부의

48) 호주 정부 홈페이지, "Labor is delivering on help for households and a fairer society," 2024. 7. 1., <https://www.pm.gov.au/media/labor-delivering-help-households-and-fairer-society>, 검색일자: 2024. 7. 16.

49) 세부 내용은 「KIPF_재정동향」 5월호 6. 호주 부분」에서 확인

50) 정액 지원이며,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요금에서 청구 할인 형식으로 지원

51) 호주 재무부, "New legislation to ensure multinationals pay a fairer share," 2024. 7. 4.,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new-legislation-ensure-multinationals-pay-fairer-share>, 검색일자: 2024. 7. 19.

- 2023-24회계연도 예산안에 명시
-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연간 글로벌 수익이 최소 7억 5천만유로(약 12억호주달러) 이상인 모든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내 최저한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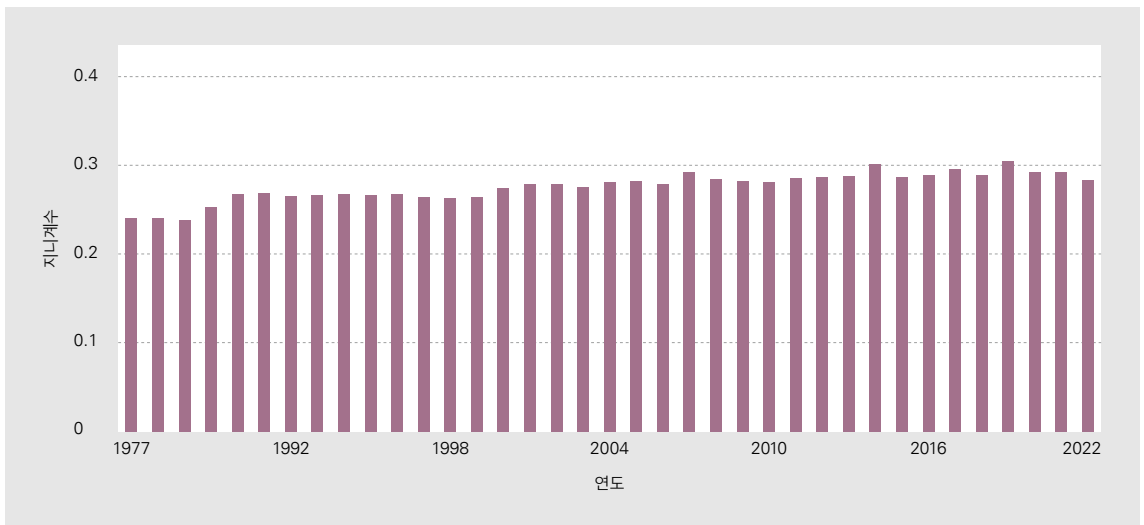


네덜란드

- 네덜란드 통계청, 소득불평등 비교 통계 발표 (2024. 7. 3.)^{52), 53)}

- 2022년 네덜란드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0.285였으며, 부의 불평등은 0.711로 나타나 소득격차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로 표현되며, 0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전평등, 1은 한 가구만 소득이 있고 나머지 가구는 소득이 없는 완전불평등을 의미
-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기침체 이후 임금 상승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최저임금 및 각종 복지혜택 동결 등으로 소득 불평등은 증가했으며, 199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소득불평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적
- 2022년 네덜란드 가계의 총자산 중 최저소

[그림 3] 네덜란드의 소득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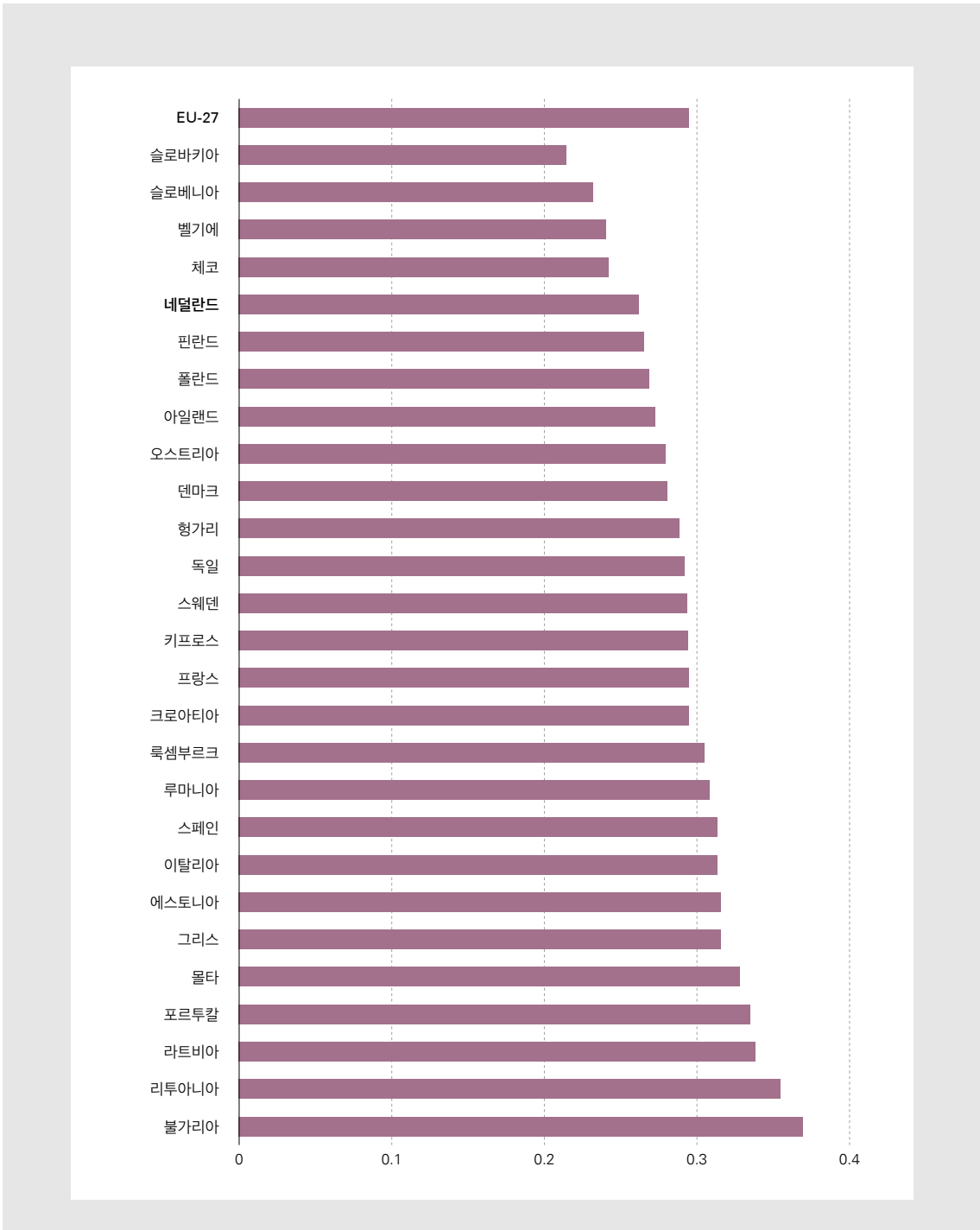


주: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Inkomensongelijkheid in Nederland ruim onder het EU-gemiddelde," 2024. 7. 3.

52) 네덜란드 통계청, "Inkomensongelijkheid in Nederland ruim onder het EU-gemiddelde," 2024. 7. 3., <https://www.cbs.nl/nl-nl/nieuws/2024/27/inkomensongelijkheid-in-nederland-ruim-onder-het-eu-gemiddelde>, 검색일자: 2024. 7. 3.

53) 2022년 수치는 잠정치이며, 2022년 최종 수치와 2023년 잠정 수치는 2024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

[그림 4] EU 회원국의 소득불평등도



주: 지니계수를 나타냄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Inkomensongelijkheid in Nederland ruim onder het EU-gemiddelde," 2024. 7. 3.

특층 보유 비중은 4%, 최고소득층 보유 비중은 33%로 최고소득 집단이 전체 부의 1/3을 소유

- 평균 소득이 높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블로멘달(Bloemendaal), 라렌(Laren), 블라리쿰(Blaricum), 바센나르(Wassenaar))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 EU 27개 회원국의 소득불평등을 낮춘 순으로 나열했을 때 네덜란드는 5위를 차지
 - 소득불평등이 가장 작은 국가는 슬로바키아(0.216), 가장 큰 국가는 불가리아(0.372)로 나타남



스웨덴

■ 스웨덴 통계청, 2025년 물가기준액(Prisbasbeloppet) 발표(2024. 7. 12.)⁵⁴⁾

- 현행 「사회보험법(2010:110)」 규정에 따라 물가기준액은 1998년 물가기준액의 기준이 되는 36,396을 사용하여, 매년 물가기준액이 적용되는 전년도의 6월의 물가 수준과 1997년 6월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교 수치를 곱하여 계산

$$\text{물가기준액} = 36,396 \times \frac{\text{전년도 6월 물가수준}}{\text{1997년 6월 물가수준}}$$

- 정부는 스웨덴 통계청에 물가기준액을 산출하도록 의뢰하였고, 계산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짐

- (물가기준액 계산) 2025년 물가기준액은 58,800스웨덴크로나로, 2024년 물가기준액과 비교하여 1,500스웨덴크로나 인상
 - 물가기준액은 사회의 물가 동향을 반영하며 다양한 재정 한도 및 상한선에 대한 참고 수치로,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에 사용되며, 기여금과 보상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고, 소득, 혜택 및 수수료를 계산할 때도 사용⁵⁵⁾
 - 1997년 6월과 2024년 6월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257.38, 415.86(1980=100)으로 계산되었고, 비교 수치는 415.86/257.38으로 1.6157로 나타남
 - 물가기준액을 구하는 기준 숫자 36,396에 비교 수치 1.6157을 곱하고 백의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
- (인상된 물가기준액 계산) 2025년 인상된 물가기준액(förhöjda prisbasbeloppet)은 6만스웨덴크로나로, 2024년과 비교하여 1,500스웨덴크로나가 인상
 - 인상된 물가기준액은 연금 수령 가능 소득 계산 및 연금 포인트 적립에 사용
 - 인상된 물가기준액은 일반 물가기준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나 기준 숫자가 37,144

54) 스웨덴 통계청, "Price base amount for 2025," 2024. 7. 12.,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rices-and-consumption/consumer-price-index/consumer-price-index-cpi/pong/statistical-news/price-basic-amount-2025/>, 검색일자: 2024. 7. 25.

55) fremia, "Rejal höjning av prisbasbeloppet 2024," <https://www.fremia.se/nyhetsrum/nyheter/2023/prisbasbelopp-2024/>, 검색일자: 2024. 7. 26.

<표 11> 2017~2025년 스웨덴 물가기준액 및 인상된 물가기준액

(단위: 스웨덴크로나, %)

연도	물가기준액 (Prisbasbeloppet)	전년 대비 증가율	인상된 물가기준액 (förhöjda prisbasbeloppet)	전년 대비 증가율
2017년	44,800	0.7	45,700	0.7
2018년	45,500	1.6	46,500	1.8
2019년	46,500	2.2	47,400	1.9
2020년	47,300	1.7	48,300	1.9
2021년	47,600	0.6	48,600	0.6
2022년	48,300	1.5	49,300	1.4
2023년	52,500	8.7	53,500	8.5
2024년	57,300	9.1	58,500	9.3
2025년	58,800	2.6	60,000	2.6

출처: 스웨덴 통계청, "Prisbasbeloppet (Basbeloppet). År 1960 - 2025,"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PR_PR0101_PR0101E/Basbeloppet/, 검색일자: 2024. 7. 18.
 _____, "Förhöjt prisbasbelopp. År 1996 - 2025,"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PR_PR0101_PR0101E/Basbelopp/, 검색일자: 2024. 7. 18.

라는 차이가 있음(37,144x1.6157=60,000, 백의 자리까지 반올림)

$$\text{인상된 물가기준액} = 37,144 \times \frac{\text{전년도 6월 물가수준}}{\text{1997년 6월 물가수준}}$$

- 물가기준액과 인상된 물가기준액은 통계청이 계산한 제안을 정부가 최종 결정

■ 스웨덴 노동부·재무부·기후경제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2024. 7. 18.)⁵⁶⁾

- (배경)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 단순화 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을 통하여 5,150만스웨덴크로나를 투자

- 2024년 4월 10일, 정부 기자회견에 따른 지급까지의 규제 단순화 시행은 다음과 같음⁵⁷⁾

- 규제 단순화를 위한 약 30개 기관에 업무 배정 및 보고 요건 강화
- 기업에게 중요한 플랫폼인 Verksam.se의 강화
- 지방정부 행정부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
- 2024년 7월 1일부터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하여 연간 39억스웨덴크로나 절감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업 수 감소
- 댄스허가(danstillståndet)⁵⁸⁾ 폐지 및 호텔

56) 스웨덴 노동부·재무부·기후경제부, "Regeringen tar ytterligare steg för att minska företagens regelbörda," 2024. 7. 1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7/regeringen-tar-ytterligare-steg-for-att-minska-foretagens-regelborda/>, 검색일자: 2024. 7. 25.

57) 스웨덴 기후경제부, "Nytt Förenklingsråd ska minska företagens regelbörda," 2024. 4. 10.,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4/nytt-forenklingsrad-ska-minska-foretagens-regelborda/>, 검색일자: 2024. 7. 31.

58) 공공 장소에서 공개 모임 및 공개 행사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경찰청의 허가

허가 요건 폐지 추진 중

- 규제 단순화 정책은 비즈니스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더 많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웨덴에서 사업을 시작·운영·발전하는 것이 쉽도록 하고, 기업과 기업가가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도록 함
- 그러나 스웨덴 경제개발청(Tillväxtverket)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규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깨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 단순화를 추진
- (내용) 정부는 공격적으로 규제 단순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청의 지원을 받아 11개 기관이 작업을 진행하는 중
 - 11개 기관은 노동안정청(Arbetsmiljöverket), 공공보건청(Folkhälsomyndigheten), 스웨덴 해양수자원관리청(Havs- och vattenmyndigheten), 화학물질청(Kemikalieinspektionen), 식품청(Livsmedelsverket), 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 국세청(Skatteverket), 농업위원회(Statens jordbruksverk),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위원회(Styrelsen för ackreditering och teknisk kontroll: SWEDAC), 지질조사국(Sveriges geologiska undersökning: SGU) 등이 있으며 경제개발청(Tillväxtverket)은 이 작업을 지원

하는 임무를 맡음

- 이 작업에는 기업의 관점, 조건 및 필요에 기반하여 정부의 운영 영역 내에서 규제 간소화를 위한 기회를 매핑하고, 분석한다는 내용이 포함
 - 매핑을 통하여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와 간소화 조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규제를 식별
 - 매핑과 분석을 바탕으로 당국은 자체 규정과 일반적인 조언을 검토하고 단순화
 - 효과적인 단순화 조치를 위해 법률 및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국은 해당 변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 에바 부시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검토하여 기업과 기업가들이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
-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업이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규제 간소화”라고 강조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통권 제338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월간 재정포럼

2024년 8월 16일 발행 / 통권 제33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